

대한공증인협회 주요 회무

(2022. 1. 1.~2022. 12. 31.)

공증법령 개정 의견 제시

1 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 제도에 대한 의견 조회 회신(2022. 3. 18.자)

□ 2022년 2월 국무총리 소속 시민사회 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비영리법인 온라인 총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법인 제도를 확대해 달라는 취지로 두 가지의 공증인법 개정안(아래 표 참조)이 제안된 것과 관련하여, 법무부가 동 개

정안들에 대한 협회의 의견을 요청해 온 데 대하여, 협회는 의사록 인증 제도를 통해서 부실등기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공증을 받기 위해서 구성원들 개 개인의 협력이 필요한 점으로 인하여 법인 총회 등이 형해화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까지 생각한다면,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도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의사록에 대하여는 공증인의 확인을 거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개정안의 대안을 별도로 제시하는 의견서를 2022. 3. 18. 법무부에 회신함.

※ (간담회 제시 1안) 민법상 비영리법인 등을 제외대상으로 일괄 지정

현 행 안	개 정 안
<p>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①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p>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①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3. (현행과 같음)

※ (간담회 제시 2안)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특정 공익법인을 제외대상으로 일괄 지정

현 행 안	개 정 안
<p>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①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p>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①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 협회 의견서 원문

<공증협 제2022-15호(시행 2022. 3. 18.)>

수 신 : 법무부장관

제 목 : 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 제도에 대한
의견 조회 회신

1. 귀 부 문서번호 법무과-2066(시행 2022. 3. 11., 협회 접수 2022. 3. 15.)과 관련입니다.
2. 우리 협회는 귀 부에서 요청한 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 제도에 대한 의견 조회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협회 의견을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 제도 관련
대한공증인협회 의견서 1부

※ 붙임

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 제도 관련
대한공증인협회 의견서

㉠ 제1안 및 제2안에 대한 검토

1. 제1안에 대하여

- (1)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결의 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이 충분히 담보된다는 것을 근거로 드는 것은 현재 주무관청의 감독이 법인의 결의 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데에는 전혀 미치지 않으므로 수긍할 수 없음. 왜냐하면 주무관청의 감독은 법인(정확하게는 법인 대표자 또는 임원)이 제출한 서면으로 법인 운영상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없는지(주로 당위적인 문제)를 살필 뿐인 것이지, 결의의 절차와 내

용이 진실하다는 것(사원의 총의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살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 다시 말해 주무관청의 감독과 의사록 인증 제도의 기능은 법령을 위반한 사항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주무관청의 감독 기능과 일부 중첩되지만 의사록 인증의 본질은 의사록에 기재된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공증인이 확인하는 데 있으므로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의사록 인증이 필요 없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음.

- (2)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고 있는데 의사록 인증을 따로 받도록 하는 것은 이중적 규제에 해당한다는 것을 주장의 근거로 드는 것은 주무관청의 감독기능과 의사록의 인증제도의 기능이나 목적이 서로 달라 이중적 규제라고 할 수 없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의사록 인증 제도의 본질은 결의 절차와 내용의 진실성(법인이 사원의 총의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을 확인하는 데 있고, 주무관청의 감독은 결의 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 운용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적법성을 위주로 심사하는 것임. 따라서 주무관청의 감독과 의사록 인증제도는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만 일부 기능이 중복될 뿐, 그 기능이나 목적이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의사록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이중적 규제라고 하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음.

- (3) 시민사회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의사록 인증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자면, 공증인에 의하여 의사록 인증을 받지 않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의 형식적인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될지는 몰라도 그 단체의 실질적 자율성은 오히려 훼손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왜냐하면 시민사회단체의 의사가 특정 이사진이나 소수의 특정 세력에 의하여 좌지우지될 수도 있는 현실에 비추어 단체의 구성원 개개인의 의사가 총합된 총의를 존중되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고 판단되고, 그런 점에서 의사록 인증제도는 단체의 총의가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4) 상법상 소규모회사를 받기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사록인증을 면제하는 것은 기업이 신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법인설립을 최대한 신속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비영리사단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도 이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매우 의문임.

- (5) 결론적으로 제1안의 근거로 드는 어떤 점도 수긍하기 어려움

2. 제2안에 대하여

- (1) 제2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지정하는 특정 공익 법인에 한하여 일괄적으로 의사록 인증을 면제하고자 하는 것(제1안)이 너무 인증 면제 법인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해서 이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고안한 방안으로 보임. 그러나 의사록 인증 제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세청장이나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하여 인증 면제 법인이 지정되도록 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법체계상으로 맞지 아니한 방안임.

- (2) 제2안은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법인 등’ (※주: 이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과는 다른 개념임)으로 제한해도 ‘공익법인 등’이 국세청장과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결의 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국

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을 지정한다고 해서 국세청장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을 감독 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음.

‘공익법인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그 ‘공익법인 등’에 기부한 경우 그 기부금에 대하여 법인기업의 손비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비영리법인 등은 법인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등’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것이며, 일단 ‘공익법인 등’으로 지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계속 그 지위가 유지되고 있다고 함(3년 혹은 6년 동안 그 지위가 유지되는 것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하는 주장도 있음).

따라서 법인 총회 등의 결의가 있을 때마다 그 결의에 관하여 국세청장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개별적으로 심사하거나 감독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므로 국세청장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공익법인 등’으로 지정된 법인의 의사록은 결의 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된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음.

- (3) 결론적으로 제2안은 제1안의 문제점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위와 같은 문제가 있으므로 의사록인증 제외법인을 정하는 기준으로 타당하지 아니함.

㉔ 협회의 대안

1. 이유

시민사회단체는 의사록 인증을 받는 데 참석인증 방식은 수수료가 부담되고, 청문인증 방식은 의결권을 행사한 구성원들로부터 일일이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아내야 하므로 너무 번거롭다는 점을 들어 비영리법인은 분쟁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주장하며 의사록 인증을 일괄적으로 면제해 달라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와 같이 비영리법인이 의사록 인증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의사록 인증 제도를 통해서 부실등기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공증을 받기 위해서 구성원들 개개인의 협력이 필요한 점으로 인하여 법인 총회 등이 형해화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까지 생각한다면,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도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의사록에 대하여는 공증인의 확인을 거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에 협회는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의사록에

대하여는 공증인이 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 아래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함.

즉 비영리법인에 대한 청문인증에 관해서는 선서인증 제도를 활용하여 의장으로 하여금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게 함으로써 구성원들로부터 일일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징구하지 않아도 인증을 해주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참석인증에 관해서는 공증인이 의결장소에 출석하여 결의 절차와 내용을 검사한 경우 그 수수료에 대하여 현행 수수료 규칙상 제19조의2를 적용하는 것으로 유권해석 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명문으로 수수료 규칙에서 정하되, 비영리법인에 대한 결의절차와 내용을 검사한 경우의 검사 수수료를, 영리법인에 대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인하하자는 것이 협회가 마련한 대안의 골자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과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면 됨.

2. 개정안

(1)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37조의3(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① 법 제66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p>	<p>제37조의3(의사록 인증 면제) ① 법 제66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란 의사록에 대하여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기명날인을 한 사람으로부터는 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의사록의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하여 그 사실을 증서에 적으면서, 의장으로부터 법 제57조의2의 방법에 따라 의사록에 적힌 내용이 진실</p>

현행	개정안
<p>1.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p> <p>2.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p> <p>② 법 제6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p> <p>1.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p> <p>2.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p>	<p><u>힘을 선서하게 하고 그 선서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u> 인증받은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2)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21조(상법상의 정관 등의 인증) ①상법의 규정에 의한 정관인증의 수수료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는 8만원으로 하고,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2천분의 1을 더하되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p> <p>② 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의 인증의 수수료는 3만원으로 한다.</p> <p><신설></p> <p><신설></p>	<p>제21조(상법상의 정관 등의 인증) ① <현행과 같음></p> <p>② 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의 인증의 수수료는 만원으로 한다.</p> <p>③ 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을 인증하기 위하여 공증인이 해당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한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제1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 외의 법인에 대하여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대신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p> <p>④ 공법인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p>

2 공증인법 제66조의2 개정안 건의(2022. 9. 20.자)

- 법무부 공증제도개선위원회 제22차 회의(2022. 7. 26.)에서는 ① 법무과에서 선정한 검사결과서 작성 의무 신설 등을 통한 참석인증 제도 관련 공증인법 제66

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개정안, ② 우리 협회에서 건의한 선서인증 제도의 활용을 통한 공법인·비영리법인에 대한 의사록인증 면제 제도 관련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개정안, ③ 사서증서 보존기간 확대 방안, ④ 수수료 계산서 편철방식 및

서식 변경 등의 논의가 진행되었던 것과 관련하여, 협회는 이후 참석인증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따라 검토중인 공증인법 제66조의2의 개정 추진을 계기로, 동조에 관하여 개정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이번 기회에 전부 다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상기 ②의 경우도 법률체계에 맞게끔 시행령이 아닌 법률 개정 사항으로 포함하며, 추가로 현행 등기실무상 인증받은 의사록 대신 인증받지 아니한 ‘서면결의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의 상업등기선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차제에 ‘서면결의서’도 인증받도록 하는 규정을 공증인법에 명문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음을 건의하는 공문을 법무부에 2022. 9. 20.자로 제출함.

● 협회 의견서 원문

〈공증협 제2022-64호(시행 2022. 9. 20.)〉

수신 : 법무부장관

제목 : 공증인법 제66조의2 개정안 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개최된 제22차 공증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1) 법무과에서 선정한 검사결과서 작성 의무 신설 등을 통한 참석인증

제도 관련 공증인법 제66조의2(법인의 사록의 인증) 개정안과 (2) 우리 협회에서 건의한 선서인증 제도의 활용을 통한 공법인·비영리법인에 대한 의사록 인증 면제 제도 관련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2(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개정안이 논의되었는바, (1)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서를 바탕으로 검사에 참여하지 아니한 공증인이 의사록을 인증할 때는 사전허가보다는 사후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원안에 찬성하였으나 (2)에 대하여는 취지는 일용 이해되는 면이 있으나 시행령이 아닌 법률 개정 사항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법률체계상 맞을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한편, 상법이나 공증인법에 관한 유권 해석 소관 기관인 법무부는 주식회사에 서면결의가 도입된 때부터 서면결의 시에도 정식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결의한 때와 마찬가지로 결의에 관하여 의사록이 작성되고 동 결의에 따라 법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의사록을 공증인으로부터 인증을 받아 등기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이러한 입장은 공증업계*는 물론 상법학계**로부터도 지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실무에서는 인증받은 의사록 대신 인증받지 아니한 ‘서면결의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것이 용인되고 있는 지 오래입니다.

- * 「공증과신뢰」 통권 제7호(대한공증인협회, 2014), 117면부터 168면까지(남상우 공증인 집필부분)
 ** 「주식회사법 대계」 II 제4편(법문사, 2022), 77면부터 106면까지(이형규 교수 집필부분)

협회를 통해 이러한 등기실무관행이 존재함을 뒤늦게 알게 된 법무부에서는 공증제도개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면결의서도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공증인법 개정안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 법무부 내부 검토과정에서 국회에 제출하는 최종 정부안에서는 그 내용이 삭제된 일이 있습니다(전언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경우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경우에도 등기신청서에는 인증받은 의사록을 첨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므로 굳이 이를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고, 당연한 사항을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후 대법원은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경우에도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점을 천명하면서도 등기신청서에는 인증받지 아니한 서면결의서를 첨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업등기선례^{***}를 제정하였습니다.

^{***} 소규모 주식회사에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첨부정보 / 제정 2018. 9. 14. [상업등기선례 제 201809-2호, 시행]

그러나 이는 자가당착입니다. 왜냐하면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을 경우에도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면, 법인등기신청서에 첨부할 결의에 관한 증서는 의사록이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등기실무상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면결의서’는 제목만 다를 뿐, 의사록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위 선례는 당장 폐기되어야 마땅하지만, 그것이 대법원에서 제정한 것인 이상 이를 바로 잡는 방법은 공증인법에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면결의서’도 인증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4. 이에 협회는 참석인증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따라 검토되고 있는 공증인법 제66조의2의 개정 추진을 계기로, 동조에 관하여 개정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이참에 전부 다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협회 내부적으로 의사록인증 제도 전반에 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서, 붙임과 같은 공증인법 제66조의2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5. 따라서 귀부에서 장차 의사록인증에 관한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대한 개정을

추진할 때, 붙임과 같은 공증인법 제66조의2 개정안의 취지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대한공증인협회의 공증인법 제66조의2 개정안 대비표 1부(3매).

※ 붙임

대한공증인협회의 공증인법 제66조의2 개정안 대비표

현 행	협회 개정안
<p>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①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 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p>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인증은 공증인이 법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사실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한 후 그 검사 결과와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 2. 공증인이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그 진술과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 <p><신 설></p> <p><신 설></p>	<p>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①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 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거나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그 결의에 관하여 작성된 증서를 포함한다)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2. 삭제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p>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인증은 공증인이 의사록에 기재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사실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한 후 그 검사 결과와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 2. 공증인이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그 진술과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 <p>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법인·비영리법인(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조합이나 재건축조합 등 조합원의 출자기역에 따라 의결권이 부여되는 법인은 제외)의 의사록을 인증할 경우에는 공증인은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총회 등에 출석하고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 중 1인으로 하여금 공증인법 제57조의2에 따라 선서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p> <p>⑤ 공증인은 제3항 제1호에 따라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령에 따라 검사결과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한 다음,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p>

현 행	협회 개정안
<p><신 설></p> <p><신 설></p> <p>④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할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제57조 제3항,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 제1항·제3항, 제64조, 제65조 제1항·제3항 및 제66조를 준용한다.</p>	<p>⑥ 제3항 제1호에 따라 결의의 절차와 내용을 검사한 공증인이 법무부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에 관한 의사록을 인증할 수 없는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작성된 검사결과서를 보존하고 있는 공증인은 검사결과서와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사실을 확인한 후 인증할 수 있다.</p> <p>⑦ 제6항에 따라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의사록을 인증한 때에는 공증인은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이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⑧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할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⑨ 제1항에 따른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제57조 제1항·제3항,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 제1항·제3항, 제64조, 제65조 제1항·제3항 및 제66조를 준용한다.</p>

3 인도집행증서 작성 대상 동산의 범위 확대를 위한 공증인법 시행령 개정 건의(2022. 11. 30.자)

□ 협회는 2022년도 제1차 임시총회(2022. 10. 29.)에서 출석 회원이 제안한 인도집행증서 범위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2년도 제13차 상임이사회 의결로 TF 형태의 ‘법령개정추진위원회’를 2022. 12. 7. 설치한 후,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2(특정동산의 범위) 각 호 동산 중에서 제2호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제3호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제6호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등기되거나 등록된 동산 규정을 각각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인도집행증서 작성 대상 동산의 범위 확대를 위한 「공증

인법 시행령」 개정 건의” 공문을 법무부에 2022. 11. 30.자로 발송함.

● 협회 의견서 원문

<공증협 제2022-90호(시행 2022. 11. 30.)>

수 신 : 법무부장관

제 목 : 공증인법 제66조의2 개정안 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 침체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공증업무처리 건수도 전국적으로 가파른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별첨 통계자료 참조). 그러다보니 회원들이 공증사무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유지하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3. 이러한 때에 협회는 최근 2023년 집행부 임원 선출을 관리할 선거관리위원장의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바, 총회에 출석한 회원들은 사전에 통지된 의안에 대한 결의 외에 추가로 협회가 공증지역 확대에 좀 더 가열찬 노력을 기울여 줄 것과 함께 최우선적으로 동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공증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별첨 의사록 사본 참조). 공증실무상 주로 이용될 만한 등기·등록된 동산에 대해서 오히려 공증인법 시행령이 막고 있으니 협회에서 법무부에 건의하여 해당 조항을 개정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4. 사실 협회는 인도집행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 동산의 범위를 정한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2 조항 신설 단계에서부터 등기·등록된 동산이야말로 인도집행

증서를 작성하기에 적합하다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어느 덧 동산인도집행증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된 지도 10여 년이 됩니다. 비록 실무상 동산인도집행증서 작성이 드문 편이지만 10여 년 동안의 경험으로 이제 등기·등록된 동산에 대해서 인도집행증서 작성사무에 관한 공증실무 역량도 어느 정도 길러졌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산의 가치나 크기 등을 감안할 때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으로 등록된 기업재산은 여전히 좀 더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5. 이에 협회는 회원들의 총의를 모아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2를 아래와 같이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여 줄 것을 공증인법 제77조의7에 따라 귀 부에 간곡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현 행	협회 개정 건의안
<p>제37조의2(특정동산의 범위) 법 제56조의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이란 「민법」 제99조 제2항의 동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4.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5.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으로 등기된 기업재산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등기되거나 등록된 동산 	<p>제37조의2(특정동산의 범위)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삭 제>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삭 제>

6. 참고로 귀 부는 2016. 11. 14. 입법예고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대통령령에 규정된 등기·등록 대상이 되는 동산에 대하여는 인도집행증서를 작성할 수 없도록 한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이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다루는 것이 좋다는 이유로 국회에 제출된 최종 개정안에서는 제외되었던 적이 있었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 붙임 :** (1) 연도별 공증업무처리건수 통계 현황(12년간 추이) (1매).
 (2) 2022년도 제1차 임시총회 의사록 사본 1부(13매).

【※ 편집자 주】

동 공문에 첨부한 2022년도 제1차 임시총회 의사록 사본은 생략함.

※ 붙임

연도별 공증업무처리건수 통계 현황(12년간 추이)

연도	공정증서	인 증 서				확정일자	기타	총합계
		정관	의사록	사서증서	합계			
2010	760,336	10,985	396,193	823,075	1,230,253	1,717,656	163,834	3,872,079
2011	873,252	8,556	438,766	891,413	1,338,735	2,383,637	206,843	4,802,467
2012	701,793	5,582	402,150	861,561	1,269,293	1,856,562	199,866	4,027,514
2013	494,745	4,697	394,639	827,699	1,227,035	2,180,046	128,642	4,030,468
2014	293,953	3,699	80,142	756,220	1,140,061	2,292,622	99,355	3,825,991
2015	303,793	3,195	383,747	722,740	1,109,682	2,253,322	91,497	3,758,294
2016	286,850	2,668	366,111	734,790	1,103,569	2,262,946	92,451	3,745,816
2017	270,872	2,433	331,446	740,618	1,074,497	1,937,764	91,083	3,374,216
2018	245,743	2,329	353,491	736,212	1,092,032	1,624,112	88,762	3,050,649
2019	229,065	2,288	346,906	707,319	1,056,513	1,365,211	88,253	2,739,042
2020	199,035	2,304	354,822	524,440	881,566	1,284,822	80,736	2,446,159
2021	168,586	2,391	360,243	531,098	893,732	1,397,175	71,595	2,531,088
2022	131,190	1,626	289,082	459,012	749,720	1,085,093	51,580	2,017,583

➡ 위 자료는 법무부 법무연감 발췌 및 법무부 법무과에서 제공받은 자료임.

(단, 2017년도~2021년도 총 합계는 2022년도 법무연감 통계 자료와 약간의 차이가 있음)

* 2022년도 자료는 1. 1.부터 10. 31.까지의 통계로, 협회 내부자료에 의한 비공식 통계임

(단, 공증대행청의 통계는 포함되지 않음) ☐

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대한공증인협회의 건의(2022. 12. 12.자)

□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이른바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 등 임대차 정보의 확인권 등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협회는 개정안 취지에는 적극 찬성하고, 다만 주택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 부여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선 하급기관만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공증인법 제77조의7에 따라 일선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하급기관을 제외한 ‘주택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의 부여 기관’, 즉 지방법원 등이나 공증인에 대하여는 ‘확정일자 부여기관’에서 제외하는 입법조치도 함께 추진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무부에 2022. 12. 12.자로 제출함.

● 협회 의견서 원문

〈공증협 제2022-93호(시행 2022. 12. 12.)〉

수 신 : 법무부장관
 제 목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대한공증인협회의 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부의 2022. 11. 21.자 법무부공고 제 2022-381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부여기관’ 중 하나로 규정된 공증인들로 구성된 우리 협회는, 원칙적으로 이른바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 등 임대차 정보의 확인권 등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취지에 적극 찬성합니다.
3. 다만 이러한 제도 개선 효과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우리 협회는 공증인법 제77조의7에 따라 일선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하급기관을 제외한 ‘주택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의 부여 기관’, 즉, 지방법원 등이나 공증인에 대하여는 ‘확정일자 부여기관’에서 제외하는 입법조치도 함께 추진해 줄 것을 붙임 의견서와 같이 건의하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사항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대한공증인협회의 건의 1부

※ 붙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대한공증인협회의 건의

1. 정부(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른바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 등 임대차 정보의 확인권 등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는바, 원칙적으로 이와 같은 개정안 취지에 찬성하면서, 이러한 제도 개선 효과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확정일자 부여 기관을 지방법원 등이나 공증인에서 제외하고, 일선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하급기관으로 단일화하는 입법조치도 함께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1항에 따르면, 주택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부여할 기관은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선 행정관청 외에 법원 또는 등기소나 공증인까지 확정일자 부여 기관으로 정한 것은 그들이 이미 민법 부칙 제3조에 따라 확정

일자 부여 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와 같이 확정일자 부여 기관이 3원화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 정보도 따로 집중관리되고 있고, 특히 공증사무소에서 받은 확정일자 정보는 대한공증인협회나 법무부 등 어디에서도 집중관리하고 있지 않고 개별 공증사무소의 확정일자부호만 확인 가능합니다. 더구나 공증실무상으로는 위 법문의 ‘주택의 소재지의’는 뒤에 나오는 ‘공증인’ 등에는 걸리지 않는 것으로 업무처리가 되고 있어서 전국의 어느 공증사무소에서나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주택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 부여기관이 단일화되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거안정에 관한 정책을 올바르게 수립하는 데는 주택임대차 정보가 단일기관에서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지방법원 등 사법부에 속한 기관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것도 적당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제도는 민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확정일자과

는 다른 특수한 확정일자 제도이므로 기존 확정일자 부여기관이라고 해서 반드시 주택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도 부여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는 일선 세무서장이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이는 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 부여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선 하급기관만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른 법리적인 문제도 전혀 없다고 사료됩니다.

3. 아무쪼록 범정부 차원에서 임차인이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 보증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함에 있어서 조금의 허점도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협회는 공증인법 제77조의7에 따라 정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건의하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증업무 질의·회신

① 추심채권자의 승계집행문 부여 가능 여부 질의 회신(2022. 5. 6.자)

□ 질의 내용(원문)

□□□ 공증인 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 작성
 채권자 : A회사
 채무자 : B회사

추심채권자 C회사
 추심채권자 C회사는 채무자 A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으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재판 등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금액도 포함)에 의해 제3채무자 B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금전소비대차 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을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을 받음.

1. 위와 같은 경우 추심채권자 C회사가 □□□ 공증인 사무소에 채권의 추심권을 얻은 자로서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했을 경우 승계집행문 부여 가능 여부?
2. 위 1항의 승계집행문 부여가 가능하다면, 추심채권자가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하기 이전에 이미 A회사에게 집행문 부여를 했을 경우 가능 여부?

3. 위 1항 또는 2항이 가능하다면, 승계집행문 부여 시 어떤 소명자료를 요구해야 하는지?

◎ 협회 회신 내용

<공증협 제2022-25호(시행 2022. 5. 6.)>

1. 질의 요지

귀 인가공증인의 질의 취지의 요지는, “○ ○공증사무소에서 채권자 A회사, 채무자 B회사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후 추심채권자 C회사가 A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소송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으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의하여 제3채무자 B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금전소비대차 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사안에 있어서, ① 추심채권자 C회사가 ○ ○공증사무소에 채권의 추심권능을 얻은 자로서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했을 경우 승계집행문 부여가 가능한지 여부와 ② 위와 같은 경우에 승계집행문 부여가 가능하다면 추심채권자가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A회사에게 집행문을 부여했을 경우에도 승계집행문 부여가 가능한지 여부 및 ③ 위와 같은 승계집행문 부여가 가능하다면 승계집행문 부여 시 어떤

소명자료를 요구해야 하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추심채권자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 거부

승계집행문은 공정증서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를 위하여 내어주거나, 공정증서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승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 (2010. 7. 10. 발행, 하드커버) 제234쪽 이하에서 열거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속, 합병 등 포괄승계, ② 채권양도 또는 채무인수, ③ 채권의 전부명령, ④ 대위(代位), ⑤ 특정물의 소유권 양도, ⑥ 특정물에 관한 채무자의 점유 등의 승계, ⑦ 당사자 또는 승계인을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하는 자, ⑧ 타인을 위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된 자에 대한 확정판결이 그 타인에게 미치는 경우 등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채권의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판결(본 사안의 경우에는 공정증서)에 표시된 채권을 압류한 제3자가 전부받았음을 이유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신청함에는 그 전부명령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적시하고

있으면서도 채권의 추심명령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볼 때, 이를 반대해석하면 채권의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정증서에 표시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자는 채권자의 승계인은 아니나, 압류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채무자에 갈음하여 자기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인바,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얻고 있는 경우라면 특정승계인에 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주: 사법보좌관 실무편람에서 “부산지방법원 2007. 5. 11. 선고 2006다19686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다 40611 판결”을 자료로 들고 있는데, 법원공보에 실리지 않은 판결이어서 판결 원문은 조회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낸 금액(본 사안의 경우, “금전소비대차 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서의 청구금액)을 집행할 수 있는 금액으로 명백히 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 (2010. 7. 10. 발행, 하드커버) 제239쪽 참조}.

3. 이미 채권자에게 집행문이 부여된 후에 추심채권자가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한 경우에 부여 거부

추심채권자가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채권자에게 집행문을 부여했을 경우에도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기존 채권자에게 발급한 집행문을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증명서,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집행문을 반환받을 필요가 있지만, 이를 제출 또는 반환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고, 집행문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사실을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서 비고란에 기재하게 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기존 집행문을 반환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문 재도부여를 승계집행문 형태로 하는 것이 됨).

4. 추심채권자에게 승계집행문 부여 시 요구되는 증명, 소명자료

승계집행문은 공정증서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를 위하여 내어주거나, 공정증서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승계가 공증인에게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증명한 때에 한하여 내어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참조). 승계의 사실은 공증인에게 명백한 사실이 아닌

한, 승계를 주장하며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한 사람에게 그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2190 판결 참조).

승계인이 제출할 수 있는 증거방법은 ‘증명서’, 즉 서증에 한하는데, 그 증명서는 승계사실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증명서가 승계사실을 충분히 증명할 수 없으면 집행문부여의 소에 의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는 추심채권자에게 추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보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으로 승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부가하여 승계인을 특정하기 위하여 승계인에 대하여는 승계인의 주소 또는 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이 없는 사람은 여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등)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는 C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질의 사안의 해결

질의 사안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채권자 A회사, 채무자 B회사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후 추심채권자 C회사가 A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소송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보으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의하여 제3채무자 B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금전소비대차 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사안에 있어서 ① 추심채권자 C회사가 ○공증사무소에 채권의 추심권능을 얻은 자로서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했을 경우 특정승계인에 준하여 승계집행문 부여가 가능하고(다만 이 경우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낸 금액을 집행할 수 있는 금액으로 명백히 표시하여야 할 것임), ② 위와 같은 경우에 추심채권자가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A회사에 집행문을 부여했을 경우에도 승계집행문 부여가 가능하며, ③ 위와 같은 승계집행문 부여 시 추심채권자에게 추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보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 및 승계인을 특정하기 위한 C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증명자료로 요구하면 될 것입니다. ☑

2 유언공정증서 작성 가능 여부 관련 질의 회신
(2022. 5. 17.자)

□ 질의 내용(원문)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자의 해독 및 구술은 가능하나 청각 장애를 가진 자가 유언자로서 유언공증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협회 회신 내용

〈공증협 제2022-28호(시행 2022. 5. 17.)〉

1. 질의 요지

‘유언공정증서 작성 가능여부 문의’라는 제목하의 귀 공증인 질의 취지의 요지는, “문자의 해독 및 구술은 가능하나 청각장애를 가진 자가 유언자로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면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날인하는 방식으로 하는 유언인데(민법 제1068조 및 공증인법 제38조 제3항 각 참조), 이를 요건 별로 분설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인 2명의 참여

증인은 민법 제1072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들을 수 없는 사람은 유언자의 구수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사실상의 증인 결격자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공증실무례입니다.

(2)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자의 유언 취지 구수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 취지를 말로 표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유언자가 단순히 손짓, 발짓이나 고개를 끄덕이는 등 거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유언자가 반혼수상태였으며, 유언공정증서의 취지가 낭독된 후에도 그에 대하여 전혀 응답하는 말을 하지 아니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유언자에게는 의사능력이 없었으며 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이에 기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민법 제1068조가 정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34514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므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만,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 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우리 대법원의 판시가 있습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 51567 판결 및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1712 판결 각 참조). 그리고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한두 마디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1068조에 정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보기 어렵지만, 공증인이 사전에 전달받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한 다음 그 서면에 따라 유증 대상과 수증자에 관하여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하여 유언자가 한 답변을 통하여 유언자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그 답변이 실질적으로 유언의 취지를 진술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고,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의 내용, 유언의 전체 경위 등으로 보아 그 답변을 통하여 인정되는 유언취지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5019 판결 참조).

(3) 공증인의 필기 낭독

공증인은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자가 구술하는 유언의 취지를 기록하고 낭독하여야 합니다. 그 기록은 법문상 ‘필기’로 되어 있으나, 반드시 손으로 쓸 필요가 없이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출력하면 되고, 공증인의 보조자를 시켜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기록과 출력은 내용을 정리하여 반드시 유언자의 면전에서 할 필요는 없고, 국

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증 변호사가 미리 작성하여 온 공정증서에 따라, 의식이 명료하고 언어소통에 지장이 없는 유언자에게 질문하여 유증의사를 확인하고 그 증서의 내용을 읽어주어 이의 여부도 확인한 다음 자필서명을 받은 경우, 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8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 51567 판결 참조).

- (4) 유언자와 증인들의 승인 및 서명날인
 유언자와 증인들은 공증인의 필기 낭독을 보고 들은 후, 그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하고 각 서명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68조에서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공증인법 제38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서명날인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언자가 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날인할 수 있겠지만(공증인법 제38조 제4항 참조), 서명할 수 없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3호), 증인이 서명할 수 없는 경우란 있을 수 없습니다.

- (5) 공증인의 부기와 서명날인

공증인은 증서를 작성할 때 그가 들은 진술, 목격한 사실, 그 밖에 실제로 경험한 사실과 그 경험한 방법을 유언 공정증서에 부기하고(공증인법 제34조 참조) 서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3. 문자의 해독 및 구술은 가능하나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의 유언공증 거부

문자의 해독 및 구술이 가능하고 시각능력에는 문제가 없으나 청각장애를 가진 자(흔히 후천적으로 청각장애를 가진 경우가 그럴 수 있음)가 유언자로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위에서 살펴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중 (2)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자의 유언 취지 구수와 (3) 공증인의 필기 낭독 및 (4) 유언자와 증인들의 승인 및 서명날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의 해독 및 구술이 가능하고 시각능력에는 문제가 없으나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자의 유언 취지 구수를 함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증인의 필기 낭독을 유언자가 보고 들은 후, 그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요건과 관련하여 유언자가 들을 수 있

어야 공증인이 필기한 내용을 낭독하는 것을 듣고서 그 정확함을 승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유언자가 청각장애로 들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정확함도 승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또 다른 유력한 견해에 따르면 유언자가 볼 수 있으면서 국어를 해독할 수 있어서 필기한 내용을 보고 자신이 구수한 대로 증서가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라면, 유언자가 들을 수 없을지라도 그 정확함을 승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자의 견해에 따르면 문자의 해독 및 구술이 사별가능하고 시각능력에는 문제가 없으나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지만, 후자의 견해에 따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4. 결 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자의 해독 및 구술이 가능하고 시각능력에는 문제가 없으나 청각장애를 가진 자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하여 공증인이 그러한 사람으로부터 촉탁을 받아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는 견해가 갈리고 있습니다. 결국 협회로서는 위 민법 규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선뜻 질의에 대하여 어느 한 쪽 입장을 취하여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협회로서는 부득이 공증인이 이와 같은 사람으로부터 촉탁을 받아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촉탁인에게 무효로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에 관한 증빙자료도 남겨 둘 것을 권합니다.

또한 때에 따라서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로 인정될지라도 궁극적으로 유언자의 의사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같은 취지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남기도록 권고하는 것도 유언이 무효가 되는 일로 공증인이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막아주는 좋은 방책이 될 수 있음을 조언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보론 - 통역인 사용 관련

문자의 해독 및 구술은 가능하나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유언자로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촉탁하여 그에 관한 유언공정증서가 작성하는데 있어서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유언자를 보조하게 위하여 통역인을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촉탁인이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등 말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문자도 해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역인을 사용하여야 되는데(공증인법 제28조 참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도 유언자가 통역인을 사용

하여 구술을 보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유언은 엄격한 요식행위라는 점을 감안할 때(그래서 일본에서는 통역인을 통한 유언을 입법화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2011년 마련한 민법개정안에서 그것을 입법화하려고 하였던 것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한 통역인 사용에 관한 입법화가 있기 전에 만연히 긍정설의 입장에 서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한편 본사안의 유언자는 문자의 해독 및 구술은 가능하나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이므로 공증인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필요적 통역인 사용의 경우가 아닙니다.). ☑

3 사서증서 관련 공증수수료 질의 회신
(2022. 6. 13.자)

□ 질의 내용(원문)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해외지사의 기업운영비를 목적으로 지사 관계자 4인과 현지 변호사 4인에게 불가리아 은행과 1,500만 유로 대출계약과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는 위임장 공증 시 공증 수수료를 문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 회신 내용

〈공증협 제2022-39호(시행 2022. 6. 13.)〉

1. 질의 요지

귀 인가공증인의 질의 취지의 요지는, “해외지사의 기업운영비를 목적으로 지사 관계자 4인과 현지 변호사 4인에게 불가리아 은행과 1,500만 유로 대출계약과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는 위임장 인증 시 공증 수수료 문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위임장(위임약정)에 대한 공증 수수료

실질적 위임약정이 별도로 있음을 알 수 있는, 단순한 대리권 수여 사실만을 표창하는 위임장(가령, 변호사에 대한 소송위임장이나 법무사에 대한 등기위임장)의 인증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의2에 의하여 3천 원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 별도의 위임약정 없이 그 자체가 실질적 위임약정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의 의미도 겸하는 위임장에 대한 인증 수수료는 당해 법률행위(위임약정)에서 위임인의 급부가액(수임인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한 경우에는 곱하기 2; 이하 같음)을 그 목적가액으로 보고 수수료를 산정하면 됩니다.

여기서 위임장(위임약정)의 당해 법률행위의 목적가액(위임인의 급부가액)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즉 위임장(위임약정)에 기재되어 있는 것 등으로부터 알 수 있는 위임사무의 대상이 되는 것의 가액(예컨대, 본질의 사안의 경우 대출계약 가액인 1,500만 유로)을 당해 법률행위의 목적가액(위임인의 급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위임사무에 대한 보수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목적가액(위임인의 급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3조 본문에 의하여 2천만 10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그것입니다.

위임사무의 대상이 되는 것의 가액에 따라 목적가액을 산정하여 수수료를 받는 것이 법률행위의 목적가액의 다과에 따라 당해 사서증서로 얻은 이익이나 위험 부담이 달라져 수수료를 그 가액 다과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전반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 협회의 의견이고, 이러한 취지의 협회 의견을 이미 법무부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공증제도개선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협회의 의견에 대하여 위임사무 처리의 일환으로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장차 법률행위를 하게 되는 것과 당

장 성립된 법률행위는 엄연히 차이가 있으므로 그 목적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점이 당연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협회의 의견이 법무부의 유권해석으로 채택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로서는 공증사무 감사 시 혹시라도 지적받지 않도록 조금 더 안전한 '2. 제2문단' 후자의 견해에 따라 공증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다수 공증 실무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질의 사안의 해결

해외지사의 기업운영비를 목적으로 지사 관계자 4인과 현지 변호사 4인에게 불가리아 은행과 1,500만 유로 대출계약과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는 위임장 인증 시 공증 수수료는 '2. 제2문단' 전자의 견해에 따라 위임자 일방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위임장인 경우 그 법률행위의 목적가액을 대출계약 가액인 1,500만 유로로 보아 공증 당시의 환율에 따라 계산한 원화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수수료인 50만 원(외국어 사서증서인 경우에는 100만 원; 사본 제작 보존 수수료 별도)으로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사료되나, 현재로서는 법무부에서 이러한 수수료 산정에 대하여 명확한 지침을 내어놓지 않고 있으므로, 위임사무에 대한 보수가 따로 정해

저 있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목적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3조 본문에 의하여 2천만 10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인 25,750원(외국어 사서증서인 경우에는 51,500원; 사본 제작 보존 수수료 별도)으로 하는 다수의 공증실무례에 따르는 것이 (공증사무 감사에 대비하여) 좀 더 안전할 것이라는 정도로 회신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음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4 전주지방법원 사실조회 회신(2022. 7. 20.자)

□ 질의 내용(원문 중 발췌)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가. 공정증서(을 제○호증의1)의 진정성립 여부를 입증하기 위함.
 피고는 공정증서(을 제○호증의1)를 근거로 하여 원고에게 9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의 근거로 하는 이 사건 공정증서는 공증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일부 요건을 결한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실조회를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 결어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확인하고자 이 사건 사실조회를 신청하는바, 이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조회 사항〉

1.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 기관에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리오니 바쁘신 와중에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공증인법 제38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 제3조에 의하면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는 촉탁인에게 열람케 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후 그 취지를 증서에 적고 촉탁인이 서명날인까지 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공증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이 증서를 열석자들에게 읽어주고, 열람시켰던 바 열석자들이 이 증서의 작성내용에 이의가 없다고 승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하였다.”라고 적혀있지만, 이에 반하여 촉탁인 각각의 서명·날인이 없습

니다. 이 경우 이 사건 공정증서의 공정증서로의 효력에 대한 귀 기관의 의견은 무엇인지요(효력이 있다 / 없다).

본직은 이 증서를 열석자들에게 읽어주고, 열람시켰던 바 열석자들이 이 증서의 작성내용에 이의가 없다고 승인하고 각자 서명날인하였다. -----

촉탁인 채 권 자 ⊙ ⊙ ⊙ 
 채무자 □ □ □ 印

▲을 제○-1호증(공정증서) ○면 중 ○면 일부 발췌

3. 공증인법 제38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 제3조에 의하면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는 촉탁인에게 열람케 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후 그 취지를 증서에 적고 공증인이 서명날인까지 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공증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공증담당 변호사 印란에 날인이 없습니다. 이 경우 이 사건 공정증서의 공정증서로의 효력에 대한 귀 기관의 의견은 무엇인지요(효력이 있다 / 없다).

공증인가 ○○○○법률사무소

---시 --구 ----- ○번지의○

공증담당변호사 ☆ ☆ ☆ 

▲을 제○-1호증(공정증서) ○면 중 ○면 일부 발췌

4. 공증인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촉탁에 의하여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기 위해선 촉탁인의 성명과 얼굴을 알아야 하고, 이를 모를 때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출이나 증인 2인에 의한 확인 등의 증명 방법을 통해 촉탁인이 맞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본직은 당사자들의 촉탁에 따라 다음의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의 취지를 청취하여 이 증서를 작성한다.”라고 적혀 있어 본 증서가 촉탁에 의한 작성인 것처럼 보이거나, 촉탁인 관련 사항에 대한 기재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등이 없습니다. 이 경우 이 사건 공정증서의 공정증서로의 효력에 대한 귀 기관의 의견은 무엇인지요(효력이 있다 / 없다).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본직은 당사자들의 촉탁에 따라 다음의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의 취지를 청취하여 이 증서를 작성한다.

▲을 제○-1호증(공정증서) ○면 중 ○면 일부 발췌

5. 공증인법 제39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제38조 제5항, 동법 제3조에 의하면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가 여러 장일 경우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間印)하여야 하고, 그 증서에 다른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도 그 증서와 첨부 서면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공증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첨부된 사서증서인 '차용증서'에는 간인이 없습니다. 이 경우 이 사건 공정증서의 공정증서로의 효력에 대한 귀 기관의 의견은 무엇인지요(효력이 있다 / 없다).

【※ 편집자 주】

사실조회 원문에 첨부된 사서증서 사본 내용은 생략함.

◎ 협회 회신 내용

〈공증협 제2022-45호(시행 2022. 7. 20.)〉

1. 사실조회사항 요지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 귀 법원을 통하여 사실조회(실상은 사실조회가 아니라 의견조회라고 봄이 상당함)한 사항의 요지는, 『① 공증인법 제38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 제3조에 의하면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는 촉탁인에게 열람하게 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후 그 취지를 증서에 적고 촉탁인이 서명날인까지 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공증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

정증서에는 “이 증서를 열석자들에게 읽어주고, 열람시켰던바 열석자들이 이 증서의 작성내용에 이의가 없다고 승인하고 각자 서명날인하였다.”라고 적혀 있지만 이에 반하여 촉탁인 각각의 서명날인이 없는바, 이 경우 이 사건 공정증서의 공정증서로의 효력 유무에 대한 의견, ② 공증인법 제38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 제3조에 의하면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는 촉탁인에게 열람하게 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후 그 취지를 증서에 적고 공증인이 서명날인까지 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공증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공증담당 변호사의 印 란에 날인이 없는바, 이 경우 이 사건 공정증서의 공정증서로의 효력 유무에 대한 의견, ③ 공증인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촉탁에 의하여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기 위해선 촉탁인의 성명과 얼굴을 알아야 하고 이를 모를 때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출이나 증인 2인에 의한 확인 등의 증명 방법을 통해 촉탁인이 맞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본직은 당사자들의 촉탁에 따라 다음의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의 취지를 청취하여 이 증서를 작성한다.”라고 적혀 있어 본 증서가 촉탁에 의한 작성인 것처럼 보이거나 촉탁인 관련 사항에 대한 기재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등이 없는

바, 이 경우 이 사건 공정증서의 공정증서로서의 효력 유무에 대한 의견 및 ④ 공증인법 제39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제38조 제5항, 동법 제3조에 의하면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가 여러 장일 경우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하고, 그 증서에 다른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도 그 증서와 첨부 서면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공증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에 첨부된 사서증서인 ‘차용증서’에는 간인이 없는바, 이 경우 이 사건 공정증서의 공정증서로서의 효력 유무에 대한 의견』이라고 할 수 있음.

2. 공정증서(의 정본)에 촉탁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경우에 공정증서의 효력 유무

공정증서의 원본에 촉탁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증인법 제38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 제3조에 의하여 공정증서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할 것임.

그런데 본건 사실조회의 기초가 된 공정증서는 원본이 아니라 정본인바(정확하게는 정본의 복사본으로 협회가 사실조회 신청 대리인으로부터 구한 을 제6-1호증과 갑 제1호증은 동일하며, 실물 정본을 당사자 중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아

무도 가지고 있지 않은지는 분명하지 않음), 원본과 정본은 그 작성 방법이 조금 다름에 유의하여야 함. 즉 공정증서의 정본이란 법령상 권한 있는 사람이 공정증서의 원본을 그대로 베껴 쓴 것에 대하여 원본과 같은 효력을 준 것을 말하는데, 서명이나 인영 부분은 그대로 베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원본의 서명은 정본이나 등본에서 기명으로 대체하고, 원본의 인영은 정본이나 등본에서 ㉠ 또는 ㉡자가 새겨진 도장을 찍거나 ‘㉠’ 또는 ‘인’ 또는 ‘印’으로 인쇄하는 방법을 사용함(원본을 전자복사하여 정본을 만드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따라서 본건 사실조회의 기초가 된 공정증서 정본(또는 그 사본)에 촉탁인 각각의 직접적인 서명날인이 없음은 당연함. 다시 말해 정본은 공증인 단독으로 작성하는 문서로 촉탁인의 직접적인 서명날인은 필요 없고, 단지 촉탁인의 서명날인이 있다는 사실만 나타나 있으면 됨. 다만, 지금도 타자기로 증서를 작성하던 예전의 관행 그대로 정본이나 등본에 촉탁인 각각의 서명날인을 받는 공증사무소가 간혹 있음. 그렇게 작성된 정본이나 등본이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지만, 거꾸로 정본이나 등본에 촉탁인 각각의 직접적인 서명날인이 없다고 해서 그 정본이나 등본을 무효라고 볼 것은 더욱 아님.

3. 공정증서의 정본 중 공정증서의 원본을 베껴 쓴 부분에 공증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경우에 공정증서의 효력 유무

공정증서의 원본 말미에 공증인의 서명날인이 없으면 공정증서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공정증서의 정본임을 기재한 말지에 공증인의 서명날인이 없으면, 공정증서의 정본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할 것이나, 공정증서의 원본을 베껴 쓴 것의 마지막에 있는 공증인의 서명날인 부분(본건의 경우, 을 제6-1호증(공정증서) 7면 중 6면 일부 발취 부분)은 위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본의 서명을 정본이나 등본에서 기명으로 대체하고, 원본의 인영을 정본이나 등본에서 ㉠ 또는 ㉡자가 새겨진 도장을 찍거나 ‘㉠’ 또는 ‘인’ 또는 ‘印’으로 인쇄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그러한 것이므로(원본을 전자복사하여 정본을 만드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그 곳에 공증인의 서명날인 그 자체가 없음은 당연하며, 공증인의 서명날인은 정본의 마지막 장에 있음(을 제6-1호증(공정증서) 7면 중 7면 말미 참조).

4. 촉탁인 관련 사항에 대한 기재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등이 없는 경우에 공정증서의 효력 유무

공증인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

면 촉탁에 의하여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기 위해선 촉탁인의 성명과 얼굴을 알아야 하고 이를 모를 때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출이나 증인 2인에 의한 확인 등의 증명 방법을 통해 촉탁인이 맞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본직은 당사자들의 촉탁에 따라 다음의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의 취지를 청취하여 이 증서를 작성한다.”라고 적혀 있어 본 증서가 촉탁에 의한 작성인 것처럼 보이거나 촉탁인 관련 사항에 대한 기재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등이 없으면서 이 경우 이 사건 공정증서의 공정증서로서의 효력 유무에 대하여 조회하고 있는바, 살펴보면 촉탁인 관련 사항에 대한 기재는 공정증서의 ‘관계자 표시’의 장에 기재가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인감증명서(촉탁인의 대리인이 촉탁한 경우에 해당됨)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사본은 공정증서의 부속서류로 공증사무소에서 보존하는 촉탁서 뒤에 첨부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참고로 이에 관하여는 공정증서 작성 촉탁인이나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자 등이 부속서류 등본의 발급을 청구하여 확인할 수 있음), 만약 거기에 첨부한 바가 없다면 공정증서의 효력에 문제가 있을 것임. 다만, 위 공정증서의 기재에 따르면, 위 공정증서는 2003. 3. 12.에 작성되고 그 내용은 채권에 관하여 작성된 것이 분명한바, 그렇다면

공증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원본과 그 부속서류의 보존기간이 10년이므로 2014년 이후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5. 공정증서 또는 그에 첨부된 차용증서에 간인이 없는 경우에 공정증서의 효력 유무

공증인법 제39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제38조 제5항, 동법 제3조에 의하면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가 여러 장일 경우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하고, 그 증서에 다른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도 그 증서와 첨부 서면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공증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에 첨부된 사서증서인 ‘차용증서’에는 간인이 없으면서 이 경우 이 사건 공정증서의 공정증서로서의 효력 유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있는바,

살피자면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증인법 제38조 제5항에 따라 증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하고, 첨부 서면도 증서의 일부이므로 공증인법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서에 다른 서면을 인용하고 이를 그 증서에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 증서와 첨부 서면(첨부 서면 자체 사이 포함)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

여야 하며, 증서의 정본이 여러 장으로 되어 있으면 공증인은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증인법 제3조에 의하여 공증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함은 맞음.

그런데 사실조회신청서에 따르면 위 공정증서에 차용증서가 첨부되어 있지만 간인은 없다고 하면서, 그 전제로 공정증서가 공증인법상 유효한지 의견을 구하고 있지만 실제 차용증서를 첨부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인지는 의문임. 우선 위 공정증서 제1조에 따르면 ‘~2001년 7월 3일자 차용금증서……계약에 의거하여’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것이 공증인법 제39조에서 말하는 다른 서면을 첨부하면서 ‘인용’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함. 보통 다른 서면을 첨부하면서 이를 인용할 때는 서면의 제목 앞에 ‘별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위 공정증서의 제1조에서는 차용금증서 앞에 ‘별첨’이라는 표현이 없음. 또한 위 제6-1호증이나 갑 제1호증의 공정증서에 따르면 그에 들어 있는 서면의 제목은 ‘차용금증서’가 아니라 ‘차용증서’임.

만일 실물로서의 정본에 차용증서가 첨부되어 있고, 그것이 다른 정본의 장과 사이에 간인이 없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음. 하나는 차용증서를 첨부하면서 서면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원본이 작성된 것이 아

니고, 따라서 정본에도 차용증서가 첨부되지 않았으나 정본을 소지한 당사자(채권자)가 나중에 임의로 정본에 차용증서를 끼워 넣었을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차용증서를 첨부하면서 서면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작성할 의사로 원본이 작성되었고, 따라서 실물 정본에도 그것을 첨부되었으나 차용증서와 증서의 다른 장 사이에 간인을 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임. 만일 후자의 경우라면 원본이나 정본은 공증인법을 위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공정증서 원본이나 실물로서의 정본을 직접 보지 않은 협회로서는 사실조회 대상 공정증서의 원본이나 정본이 공증인법에서 정한 간인 방법을 위반하거나 서면인용에 의한 증서작성 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6. 결 어

결론적으로 본건 사실조회 대상 공정증서의 원본이나 그 정본을 실물로 직접 보기 전에는 그것이 공증인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사료됨.

참고로 위 공정증서 원본을 작성한 공증인 A법률사무소는 20##. #. #.자로 공증인가가 취소되고, 그 서류는 그 무렵 공증인 B법률사무소(주소 생략)에 인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만일 위 원본이 보존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폐기되지 않았다면 위 공증인 B법률사무소에서 원본을 열람할 수 있을 것임. ☐

5 사서증서 관련 공증수수료 질의 회신 (2022. 8. 31.자)

□ 질의 내용(원문)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내 업체가 제품 수출을 위해 유통 계약을 체결한 해외 업체에게 해당 국가의 관련 관청에 수입허가 신청, 수입 제품 등록 및 특허 등록 등을 위해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 위임장 공증 수수료를 문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 회신 내용

〈공증협 제2022-54호(시행 2022. 8. 31.)〉

1. 질의 요지

귀 인가공증인의 2022. 08. 04.자 질의 취지의 요지는, “국내업체가 제품 수출을 위해 유통 계약을 체결한 해외업체에게 해당 국가의 관련 관청에 수입허가 신청, 수입 제품 등록 및 특허 등록 등을 위해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에 공증 수수료 문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위임장(위임약정)에 대한 공증 수수료

실질적 위임약정이 별도로 있음을 알 수 있는, 단순한 대리권 수여 사실만을 표창하는 변호사에 대한 소송위임장이나 법무사에 대한 등기위임장 등의 인증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의2에 의하여 3천 원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 별도의 위임약정 없이 그 자체가 실질적 위임약정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의 의미도 겸하는 위임장에 대한 인증 수수료는 당해 법률행위(위임약정)에서 위임인의 급부가액(수임인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한 경우에는 곱하기 2; 이하 같음)을 그 목적가액으로 보고 수수료를 산정하면 됩니다.

여기서 위임장(위임약정)의 당해 법률행위의 목적가액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즉 위임장(위임약정)에 기재되어 있는 것 등으로부터 알 수 있는 위임사무의 대상이 되는 것의 가액을 당해 법률행위의 목적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위임사무에 대한 보수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목적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3조 본문에 의

하여 2천만10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그것입니다.

위임사무의 대상이 되는 것의 가액에 따라 목적가액을 산정하여 수수료를 받는 것이 법률행위의 목적가액의 다과에 따라 당해 사서증서로 얻은 이익이나 위험 부담이 달라져 수수료를 그 가액 다과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전반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 협회의 의견이고, 이러한 취지의 협회 의견을 이미 법무부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공증제도개선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협회의 의견에 대하여 위임사무 처리의 일환으로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장차 법률행위를 하게 되는 것과 당장 성립된 법률행위는 엄연히 차이가 있으므로 그 목적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점이 당연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협회의 의견이 법무부의 유권해석으로 채택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뒤 협회는 다시 애초 협회가 제시한 방법에 의한 가액의 반액을 목적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하였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전달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 현재로서는 공증사무 감사시 혹시라도 지적받지 않도록 조금 더 안전한 ‘2.

제3문단 제2문' 후자의 견해에 따라 공증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다수 공증실무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질의 사안의 해결

질의사안의 경우에는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법률행위의 목적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국내업체가 제품 수출을 위해 유통 계약을 체결한 해외업체에게 해당 국가의 관련 관청에 수입허가 신청, 수입 제품 등록 및 특허 등록 등을 위해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위임인만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경우)에 공증 수수료는 영문이면 51,500원, 국문이면 25,750원이라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사본 제작 보존 수수료 별도). ☑

6 신형 여권과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시 신분증의 효력 여부 회신(2022. 9. 1.자)

□ 질의 내용(원문)

본 법무법인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발급되는 신형 여권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이 발급되고, 이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여권정보증명서를 여권과 함께 제시해야 신분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외교부 민원여권과의 보도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대한공증인협회 2022. 8. 1.자 공문 공정증서 작성 시 신형 여권 또는 공무원증 등을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처리방법 안내에 제시된 주민등록(등)초본만 받아 업무처리를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한공증인협회의 주민등록(등)초본만 받아 업무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외교부에서 발급하는 여권정보증명서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 편집자 주

동 질의에 첨부된 2020. 12. 11.자 외교부 보도 자료는 생략함.

● 협회 회신 내용

〈공증협 제2022-55호(시행 2022. 9. 1.)〉

1. 질의 요지

귀 인가공증인의 2022. 8. 3.자 질의 취지의 요지는, “2020년 12월 21일부터 발급되는 신형 여권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 되지 않고, 이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여권정보증명서를 여권과 함께 제시해야 신분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외교부 민원여권과의 보도자료가 확인되는데, 대한공증인협회의 2022. 8. 1.자 공문 ‘공정증서 작성 시 신형여권 또는 공무원증 등을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처리방법 안내'에 제시된 주민등록(등)초본만 받아 업무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외교부에서 발급하는 여권정보증명서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공정증서 작성 시 신형 여권 또는 공무원증 등을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처리방법 안내의 취지

본 협회에서 2022. 8. 1.자로 시행한 '공정증서 작성 시 신형 여권 또는 공무원증 등을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처리방법 안내'의 취지는 공정증서 작성 시 제출받는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의 신분증이 신형 여권 또는 공무원증 등으로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공증인법 제2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증명서로서 촉탁인 등의 신분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그렇게 되면 촉탁인 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주소)를 제대로 확인한 후 증서에 기재할 수가 없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는 나중에 그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우려를 고려하여,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 받음에 있어서 신형 여권 또는 공무원증 등 주민등록번호의 뒷 번호가 나타나지 않는 신분증을 제출받는 경우에는 증서에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기 위하여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제출하게 하여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촉탁인 등의 특정과 관련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3. 신형 여권과 여권정보증명서로 신분 확인

외교부는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가 나타나지 않는 신형 여권을 발급하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 여권을 신분증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조치하였고, 이 여권정보증명서와 신형 여권을 함께 제시하여 신분증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질의 사안의 해결

결론적으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 받음에 있어서 신형 여권 또는 공무원증 등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가 나타나지 않는 신분증을 제출받는 경우에는 증서에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기 위하여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함께 제출하게 하여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촉탁인 등의 특정과 관련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

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주민등록 번호의 뒷자리뿐만 아니라 주소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임), 특히 신형 여권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대신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출받는 것도 가능하며 이는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제도 취지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

7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실조회 회신(2022. 9. 2.자)

□ 질의 내용(원문 중 발췌)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이 사건 공증이 현재 공증 현실상 불가능한 공증임을 입증하고자 대한공증인협회에 사실조회를 통해, 서면 공증으로 이사해임 공증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경우는 어떠한 서류를 구비해야 하고, 공증 시 사실관계의 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본건처럼, 이사 해임 후 새로운 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의 공증 시, 사실 확인 자료로서 첨부하는 주주명부의 발행자가 문제의 주주총회에서 기존 이사해임 후 새로 선임된 대표자가 확인한 주주명부를 공증 시 사실 확인의 자료로 원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사실조회 사항〉

아래와 같은 공증이 실무상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공증인법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오니 이에 대하여 회신 부탁드립니다.

- ① 이사 해임을 위한 공증의 경우 현장 공증이 아닌 서면 공증만으로 가능한 것인지 여부와 실무례
- ② 위와 같은 이사 해임을 위한 공증이 서면 공증만으로 가능하다고 한다면, 어떠한 서류를 구비해야 하고, 공증 시 사실관계의 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부
- ③ 이사해임 후 새로운 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의 공증 시, 사실 확인 자료로서 첨부하는 주주명부의 발행자가 문제의 주주총회에서 기존 이사해임 후 새로 선임된 대표자가 확인한 주주명부를 공증 시 사실확인 자료로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를 각각 확인하여 관련 문서(사본)와(과) 함께 본 법원에 신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 회신 내용

〈공증협 제2022-56호(시행 2022. 9. 2.)〉

1. 주주총회 의사록의 인증방법

사실조회사항에 대한 답변을 기술하기에 앞서 편의상 법인 의사록 인증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한 후 이를 바탕으로 기술하기로 하겠습니다.

공증인법에 따르면 의사록 인증은 공증인이 해당 의사록에 기재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2항 참조).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와 다르지 않습니다. 즉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한 사람이 직접 공증사무소에 방문한 경우에는 그가 직접 자기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임을 공증인 앞에서 확인하고, 그가 직접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본인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위임장이 인증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되어 위임장이 본인에 의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참석검사대조 방식에 의한 인증이든

청문대조 방식에 의한 인증이든 의사록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자는 의사록 인증의 촉탁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록에 기재된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증인법에서는 이른바 참석검사대조 방식과 청문대조 방식 등 두 가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3항 참조).

참석검사대조 방식은 공증인이 해당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와 내용을 검사한 후 그 검사 결과와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이고(공증인법 제66조의2 제3항 제1호 참조), 청문대조 방식은 공증인이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그 진술과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으로 하는 확인하는 것입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3항 제2호 참조) (※ 주: 실무상으로는 참석검사대조 방식에 의한 인증은 참석인증으로, 청문대조 방식에 의한 인증은 청문인증으로 부름).

여기서 공증인이 의사록에 기재된 결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어떠한 방식으로 확인할지는 공증인 본직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참석검사대조 방식은 수수료가 고액이라

청문대조 방식을 선택합니다. 의결정족수 이상의 자나 그 대리인이 공증인 앞에서 진술하여 받는 청문인증의 요건을 갖추기가 번거롭고 어려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참석검사대조 방식으로 인증을 받습니다.

공증실무상 의사록 인증은 누가 촉탁인이 되느냐와 관련하여 어느 방식이든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사람이 촉탁인인 된다는 것에 관해서는 이론이 없고 청문대조 방식에 의한 인증의 경우 의결정족수 이상의 자도 촉탁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해서도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석검사대조 방식에 의한 인증의 경우에는 누구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절차와 내용을 검사하는 것인가에 관하여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법인의 대표자가 소집권자이면서 주주총회의 의장이 됨은 물론 의장으로서 의사록에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사람이 되므로 촉탁인이 누가 되느냐는 실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대표자가 회의의 소집권자나 의장이 아닌 경우에는 특히 법인의 대표자가 인증촉탁에 협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인은 누구로부터 촉탁을 받아 의결장소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냐가 실무상으로 종종 문제됩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를 촉탁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

나 의사록에 기재된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느냐는 법인 내부적인 사항에 불과하므로 대외관계에서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자의 지위와는 무관합니다. 결국 회의를 소집한 소집권자가 의결장소에서 검사를 촉탁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하고, 다만 소집권자가 의장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의 대상이 회의 그 자체이고 회의는 의장이 주재권자이므로 의장도 소집권자와 별도로 촉탁인이 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2. 신청 대상 사실조회 사항의 부적정성

- (1) 사실조회서에 첨부된 사실조회신청서에 기재된 사실조회 사항 ①은, “이사해임을 위한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의 경우 현장공증이 아닌 서면공증만으로도 가능한지 여부와 실무례”라고 되어 있는바, 위 신청서에서는 ‘현장공증’이나 ‘서면공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주총회 의사록 인증은 그 의사록에 기재된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지에 관한 확인을 하는 방법은 ‘청문대조 방식에 의한 인증’과 ‘참석검사대조 방식에 의한 인증’이 있을 뿐이고, 공증실무상으로는 전자를 통상 청문인증, 후자를 참석인증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사실조회 사항 ①을 공증실무 상황에 맞게 “이사 해임을 의결한(또는 의결하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참석검사 대조 방식이 아닌, 청문 대조 방식에 의해서도 인증할 수 있는지”로 고쳐서 답하기로 합니다.

- (2) 사실조회신청서에 기재된 사실조회 사항 ②는 “이사 해임을 위한 공증이 서면공증만으로 가능하다고 한다면, 어떠한 서류를 구비해야 하고, 공증 시 사실관계의 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로 되어 있으나, ‘서면공증’이라는 용어도 물론이거니와 ‘이사 해임을 위한 공증’이라는 것도 법령에 맞지 아니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사실조회 사항 ②를, 공증실무의 상황에 맞게 “이사해임 등기를 경료하기 위해서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의사록을 청문대조 방식에 의해 인증할 경우, ㉠ 촉탁인으로부터 제출 받아야 하는 서류는? ㉡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의 확인 방법은?” 으로 고쳐서 답하기로 합니다.

- (3) 사실조회서에 첨부된 사실조회신청서에 기재된 사실조회 사항 ③은 “이사 해임 후 새로운 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시, 사실 확인 자

료로 첨부하는 주주명부의 발행자가 문제의 주주총회에서 기존 이사 해임 후 새로 선임된 대표자가 확인한 주주명부를 공증시 사실 확인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되어 있는 바, 그 기재만으로는 그 정확한 취지를 알기 어려워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증실무상 이사 해임과 관련하여 협회가 자주 질문을 받는 ‘주주가 아닌 대표자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1인 주주나 주주 전원이 출석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그 주주총회에서 대표자인 이사를 해임하면서 새 대표자인 이사를 선임하였다는 취지의 의사록을 인증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기술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 이사 해임을 의결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참석 인증 방식이 아닌, 청문인증 방식에 의해서도 인증할 수 있는지

가능합니다.

이사 해임을 의결한 주주총회 의사록이라고 해도 참석인증 방식은 물론 청문인증 방식으로든 요건만 충족하면 얼마든지 인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참석인증 방식으로 받을 것인지 청문인증 방식으로 받을 것인지는 공증인이 아니라 의사록을 인증 받으려는 측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공증인은 요건만 충족되면 어느 방식에

의하던 인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석인증 방식은 의사록 인증에 앞서 선행적으로 공증인이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검사해야 하고, 그 경우 검사수수료를 별도로 부담해야 하므로 비용부담에 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청문인증 방식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의결정족수 이상의 자가 촉탁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 경우 촉탁인들이나 그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동시에 출석해야 하므로 통상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참석인증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고, 실무상으로는 그밖에도 청문대조 방식에 의한 인증을 촉탁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구성원 간 분쟁이 있을 때 나중에 그 결의에 관하여 증거를 확실하게 남겨 두고자 하는 입장에서 참석검사대조 방식에 의한 인증을 촉탁하는 일도 간혹 있습니다.

4. 이사 해임을 의결한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청문인증 방식에 의해서 인증할 경우, ① 촉탁인 등으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는 서류는? ②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의 확인 방법은?

① 청문인증 방식에 의해 인증할 경우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제출받을 서류는?

대리인에 의해 촉탁이 이루어지느냐 본

인이 직접 촉탁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록 원본 2통

사서증서 인증의 경우는 원본 1통만 제출되고 그에 대해서만 인증이 부여되나 의사록 인증의 경우는 원본 2통이 제출되고, 인증이 부여된 2통 중 1통은 공증사무소에서 보관합니다.

㉡ 촉탁인이든 대리인이든 공증사무소에 출석한 사람의 신분증

㉢ 대리권을 증명할 서류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i)와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ii)가 촉탁인이 되어야 하는바, 그 중 공증사무소에 직접 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리인으로 하여금 촉탁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 경우 대리인은 자신에게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할 서류가 위임장일 경우에는 위임장에 인감증명서(그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가능하고, 인증받은 위임장이면 불필요함)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주주명부(※ 주: 별첨 자료 참조)

이는 상법상의 주주명부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소정의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주주명부를 말합니다. 주주총회 구성원인 주주명, 해당 주주의 소유주식수, 해당 주주의 회의출석 여부, 해당 주주의 의결찬성 여부 및 해당 주주의 인증촉탁 여부 및 각 그 합계 수치 등을 기재하거나 표시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식은 대표이사가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예시에 불과하고 법적인 의미에서는 회의를 소집한 소집권자와 회의를 주재한 의장이 작성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대표이사가 소집권자임과 동시에 의장이 되는 것이지만, 만일 대표이사가 아닌 사람이 소집권자이자 의장인 경우에는 그가 작성자가 되고, 소집권자와 의장이 서로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연명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㉞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의 실재(實在)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통하여 회사의 명칭, 대표자, 본점 소재지, 자본금의 액, 액면 주식의 경우 1주의 금액, 발행주식의 총수 등 의사록 인증을 할 때 확인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㉟ 정관

법인의 자치법규로서 의결내용이 정관에 위반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입니다.

㊱ 진술서(※ 주: 별첨 자료 참조)

공증사무소에 출석한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8호서식에 의거 작성합니다. 의사록에 기재된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공증인 앞에서 하고 공증인이 그 진술을 청취하였다는 의미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㊲ 확인서(※ 주: 별첨 자료 참조)

‘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사무 처리지침’ 제14조(청문인증을 위한 진술의 청취 등) 제3항에 근거한 서면으로, 위 진술서와 같은 취지이지만 내용을 잘 모르는 법무사 사무직원이 진술인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진술서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대표이사나 의장(※ 주: 현행 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사무처리지침 제14조에서는 ‘대표이사나 의장’이라고 하고 있는바, 여기서 대표이사는 소집권자로서의 대표이사를 뜻하는 것이라 해석됩니다. 한편, 위 규정의 문언상으로는 대표이사(즉 소집권자) 또는 의장 중 누가 작성한 것이든 무방한 것으로 해석되나 확인서 취지상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작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협회는 향후 그 같은 취지로 위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나 의장이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한 경우에는 위진술서만 작성하면 되고, 따로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②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확인서의 진정성립을 증빙하기 위해서 제출됩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소집권자 또는 의장이 되는 통상적인 경우에 제출되고, 주주나 감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진행한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주주명부나 확인서에는 소집권자나 의장 개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개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5. 주주가 아닌 대표자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1인 주주나 주주 전원이 출석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그 주주총회에서 대표자인 이사를 해임하면서 새 대표자인 이사를 선임하였다는 취지의 의사록을 인증할 수 있는지?

대한공증인협회는 회원 공증사무소로부터 “1인 주주나 주주 전원이 출석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그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대표자인 이사를 해임하면서 동시에 새 대표자인 이사를 선임하였다고 하면서 주주총회의사록에 대하여 인증을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위 의사록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해 줄 수 있는지, 만일 부여해줄 수 있다면, 어떠한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종종 질의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의사록 인증을 요구하는 자는 보통 소집권자에 의한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도 1인 주주나 주주 전원은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적법하게 의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합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해임된 대표자인 이사가 인감도장과 인감카드를 내놓지 않아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할 곳에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지 못하였고, 법인인감증명서도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관한 협회의 입장은 1인 주주나 주주 전원이 출석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해서 대표자인 이사를 해임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주총회 의사록에 대하여는 주주나 감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출된 주주명부(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9호서식)에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법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을지라도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예컨대 실질적으로는 사임을 하면서 스톱웁션의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해임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 등)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인증을 부여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법상 주주는 1인 주주이거나 주주 전원일지라도 대표자인 이사에게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그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스스로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점,

둘째, 현행 제도상으로는 주주명부 작성 비치할 권한이나 의무는 대표자에게 있으므로 대표자가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주주라고 하는 주장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인정할 수는 없는 점,

셋째, 재판은 변론이나 심문절차 및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라 1인 주주이거나 주주 전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공증에서는 특별한 사정(법원 허가)이 없는 한 대표자인 이사의 확인 없이 1인 주주이거나 주주 전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이 그 이유입니다.

6. 여론

위와 같이 대표자인 이사를 해임하는 것으로 된 의사록은 1인 주주라고 기재된 의

사록일지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주주총회를 소집해서 이사를 해임하는 것으로 된 경우가 아니라면{해임되는 대표이사가 주주명부(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9호서식)를 작성해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증인으로서 1인 주주임을 확인하기 어려워 인증을 부여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고로 만일 3인 이상의 이사가 있어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는 주식회사라면 이사회에서 먼저 새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대표이사 등기를 한 다음 그 새 대표이사에 의해서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절차를 밟는다면 법원 허가 절차 없이도 대표이사인 이사를 해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붙임 : 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사무 처리지침 1부.

<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사무 처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른 법인총회 등의 의사록(이하 ‘의사록’이라 한다) 인증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사록 인증 방법) 공증인은 의사록

에 대하여는 공증인법 제57조의 방법으로 인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의사록 인증 요건) ① 공증인은 의사록을 인증할 경우 의사록에 기재된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확인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 장소에 참석하여 검사하는 방법
2. 공증인이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해당 의결에 관하여 진술을 듣는 방법

③ 공증인은 의사록을 인증할 경우 의사록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사람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본인이나 대리인에 대하여는 공증인법 제27조 내지 31조를 준용한다.

제4조(주주인 사실 등의 증명 방법) ① 공증인은 주주총회 의사록을 인증할 경우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 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9호 서식에 의한 주주명부를 제출하게 하여 주주인 사실 및 의결정족수를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주명부는 다음 각 호의

날을 기준으로 작성되고, 주주총회 소집 업무를 집행한 대표나 법원의 소집 허가를 받은 신청인 주주에 의해 작성된 사실이 법인 인감증명서 등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1. 폐쇄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폐쇄기간 초일의 전일
2. 기준일을 정한 경우에는 기준일
3. 폐쇄기간이나 기준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의 일

③ 제1항의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성명·명칭 및 그 주식 수, 출석 주주 및 그 주식 수, 의안에 찬성한 주주 및 그 주식 수가 기재되거나 표시되어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수 주주의 존재로 그 기재나 표시가 곤란한 경우 또는 공증인이 회의에 참석하여 검사한 경우에는 그 총수만 기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인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2항 각호의 날을 기준으로 작성된 상법에 의한 주주명부나 전자주주명부의 등본이나 출력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이사인 사실 등의 증명 방법) 공증인은 이사회 의사록을 인증할 경우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의결정족수 및 이사, 감사인 사실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의사록의 인증과 함께 주주총회 의사록을 촉탁하는 경우에 한하

여 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해서도 이사인 사실 등을 증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공증촉탁서의 기재 방법) ① 공증인은 의사록을 인증할 때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로 하여금 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공증촉탁서의 촉탁인란 중 하나에는 법인 명칭을 또 다른 하나에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적게 한다. 촉탁인의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로 하여금 촉탁인란에는 법인 명칭과 본인 성명을 적게 하고, 자신의 인적 사항은 촉탁인란 아래에 대리인임을 표시하고 적게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촉탁인이 2인 이상이고 대리인이 단독으로 출석한 때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촉탁인란 중 대표되는 1인의 성명만 적게 하고 나머지 사람은 그 이름 옆에 인원수만 적게 한다.

제7조(인증부의 기재 방법) 공증인은 의사록 인증 관련 사실을 인증부에 기재할 경우 촉탁인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법인 명칭을 기재한다. 촉탁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인증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 ① 공증인은 다음의 경우에는 의사록에 인증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사록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할 사람이 이를 하지 않은 경우
2.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상법 기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3. 의사록의 발행주식 총수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발행주식 총수와 다른 경우

② 장기간 출장이나 소재불명 등 상당한 이유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다른 사람이 그 사유를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공증인은 의사록을 인증함에 있어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뜻을 말하고 필요한 설명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관계인이 공증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하더라도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을 거절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 제한 등) 공증인이 법인의 임원인 경우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의사록에 대하여 인증할 수 없다. 공증인 합동사무소의 다른 구성원 공증인이나 인가공증인의 다른 구성원 변호사가 그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도 그 법인의 의사록에 대하여 인증할 수 없다.

제2장 참석인증

제10조(참석인증을 위한 검사) ① 공증인은 위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확인에 따라

의사록 인증을 할 경우에는 법인의 의결 장소에 직접 참석하여 개회에서 폐회에 이르기까지 회의의 진행상황, 결의의 성립 여부를 검사 한다.

② 공증인은 제1항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로 하여금 출석 주주의 성명과 의결권의 수를 집계한 서류(대리인이 출석한 경우 위임장과 의결권의 수를 집계한 서류 포함)를 제시 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증인은 회의장이나 주변에서 고성과 폭언 등 소란행위가 발생할 경우 그 소란행위의 경위를 관계인에게 물어 볼 수 있다.

④ 공증인은 회의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직무집행 구역) 공증인은 업무집행 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제10조의 검사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참석인증에서의 부속서류) ① 공증인은 제10조의 검사를 할 때 소집통지서, 소집공고의 증명 등 회의 소집에 관한 자료, 출석 주주 및 그 주식 수(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경우 대리인에 관한 사항 포함)의 집계에 관한 자료 및 회의 안전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의사록 인증서의 부속서류로서 보존한다. 공증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도 같다.

② 회의에 참석하여 검사한 후 의사록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할 경우 공증인은 인증서 다음에 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공증촉탁서, 신분증명서 사본, 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진술서, 규칙 제39호 서식에 의한 주주명부, 법인등기 사항전부증명서, 정관, 허가서(법원의 소집허가에 의한 경우에 한함), 위임장,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를 차례로 철한 뒤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료 및 위 제4조 제4항의 자료는 적당한 방법으로 따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검사의 수수료) ① 참석인증을 위하여 공증인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 그 검사의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9조의2에 따른다.

② 공증인은 제1항의 수수료를 예납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청문인증

제14조(청문인증을 위한 진술의 청취 등) ① 공증인은 위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확인에 따라 의사록 인증을 할 때에는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결의 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을 공증인 앞에서 진술하게 하고, 공증인이 직접 그로부터 진술을 들 어야 한다.

② 공증인은 제1항의 진술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진술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공증인은 제2항의 진술인으로 하여금 등기상 대표이사 또는 의장이나 해당 의결에 출석한 이사가 작성한 <첨부 1 서식>의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대표이사 또는 의장이나 당해 의결에 출석한 이사가 제2항의 진술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증인은 당해 결의에 의하여 경영권 변동이 발생하거나, 제3항의 확인서를 특별한 사유 없이 등기상 대표이사 이외의 자가 작성하는 등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의심이 있는 경우 소집통지서를 확인하는 등으로 결의 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청문인증의 부속서류) 공증인이 의결정족수 이상의 자나 그 대리인의 진술을 듣고 의사록에 대하여 인증을 할 때에는 인증서 다음에 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공증촉탁서, 신분증명서 사본, 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진술서, 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에 의한 주주명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위 제14조 제3항 본문의 확인서, 허가서(법원의 소집허가에 의한 경우에 한함), 위임장, 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순으로 편철하여 보존하

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 8. 1.부터 시행한다.

<각주 2. 별첨 자료>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0.2.5>

주 주 명 부					
년 월 일 현재					
주주명	소유주식수	회의출석	의결찬성	인증촉탁	비고
총주식수	출석주식수	의결찬성주식수	인증촉탁주식수	1주당금액	
위 주주명부는 본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소재지 대표이사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²)

8 주민센터 팩스민원으로 송부받은 사립대학교 졸업증명서 등본인증 여부 회신(2022. 10. 11.자)

□ 질의 내용(원문)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공증인협회 카페 (698) “주민센터에서 팩스민원신청으로 송부받은 사립대학교 졸업증명서에 주민센터 직인을 날인해 준 서류에 대한 사서증서 등본인증 가부”에서 귀 협회는 “팩스로 받은 사립대학교 졸업증명서 자체는 사본이고, 그 사본에 주민센터의 직인이 날인되면 공문서에 해당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3. 그러나 주민센터의 직인 날인은 팩스 전송에 대한 확인일 뿐이고, 문서의 작성 명의인이 관공서인 것은 아니어서 문서 자체의 작성 및 발급 주체는 사립대학교이므로 공문서라고 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4. 위 건에 대한 대한공증인협회의 답변을 공문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 회신 내용

〈공증협 제2022-69호(시행 2022. 10. 11.)〉

1. 질의 요지

귀 인가공증인의 2022. 09. 28.자 ‘주민센터 팩스민원 신청으로 송부받은 사립대학교 졸업증명서 등본인증 여부 관련’이라는 제목 하의 질의 취지의 요지는, 『본 협회 카페 (698)에서 ‘주민센터에서 팩스민원신청으로 송부받은 사립대학교 졸업증명서에 주민센터 직인을 날인해 준 서류에 대한 사서증서 등본인증 가부’에서 본 협회는 “팩스로 받은 사립대학교 졸업증명서 자체는 사본이고, 그 사본에 주민센터의 직인이 날인되면 공문서에 해당된다.”고 답변하였으면서 “그러나 주민센터의 직인 날인은 팩스 전송에 대한 확인일 뿐이고 문서의 작성 명의인이 관공서인 것은 아니어서 문서 자체의 작성 및 발급 주체는 사립대학교이므로 공문서라고 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면서 위 건에 대한 본 협회의 답변을 회신해달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본 협회 카페 (698) 게시 내용

본 협회 카페 (698)로 게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698) 주민센터에서 팩스민원신청으로 송부받은 사립대학교 졸업증명서에 주민센터 직인을 날인해 준 서류에 대한 사서증서

등본인증 거부?

□ 질의내용 <2021. 1. 27. 질의>

팩스민원신청에 의하여 주민센터에서 사립대학교 졸업증명서를 팩스로 받아 주민센터의 직인을 날인해 준 서류에 대한 사서증서 등본인증이 가능한지?

□ 답 변

불가함.

사서증서 등본 인증은 사서증서의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일치함을 인정하는 인증제도임(법 제57조 제2항). 사서증서 등본 인증을 받으려면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고 이를 공증인에게 제출하여야 함. 사본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증이 불가함.

또한 사서증서 등본에 대한 인증만 허용되므로 공문서에 대한 등본 인증은 불가함.

사안의 경우 위 팩스로 받은 사립대학교 졸업증명서 자체는 사본이고, 그 사본에 주민센터의 직인이 날인되면 공문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등본인증이 불가하다고 할 것임.

한편 사립대학교 졸업증명서를 국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 없이 그 원본 자체를 제출하면 될 것이고, 추가로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다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될 것이므로, 사서증서 등본인증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임.

그러나 사안과 같은 공문서를 외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이 공문서가 그대로 통용되지 않아 공증인의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무상 촉탁인으로부터 위 공문서가 관할 당국으로부터 받은 증명서가 틀림 없다는 취지의 DECLARATION (진술서)을 받고 위 DECLARATION(진술서)에 위 공문서를 첨부하여 위 DECLARATION (진술서)을 인증해주고 있음. ☑

3. 귀 법인의 의견과 본 협회 카페 (698) 게시 내용의 당부에 대한 검토

귀 인가공증인은 “주민센터의 직인 날인은 팩스 전송에 대한 확인일 뿐이고 문서의 작성 명의인이 관공서인 것은 아니어서 문서 자체의 작성 및 발급 주체는 사립대학교이므로 공문서라고 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본 협회 카페 (698)의 게시 내용이 맞는지 귀 법인의 의견이 맞는지에 대하여 아래에서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먼저 귀 법인의 의견을 검토하여 보자면, 주민센터의 직인 날인은 팩스 전송에 대한 확인일 뿐이고 문서의 작성 명의인이

관공서인 것은 아니어서 문서 자체의 작성 및 발급 주체는 사립대학교이므로 공문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서증서의 등본인증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이나, 이 의견에는 자가당착적인 부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즉 주민센터에서 팩스민원신청으로 송부받은 사립대학교 졸업증명서는 팩스 출력 문서로서 실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원본 문서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귀 법인의 주장대로 주민센터의 직인 날인은 팩스 전송에 대한 확인일 뿐이고 법적 의미가 없다고 본다면 원본 문서가 아닌 문서에 대하여 사서증서의 등본인증을 해주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원본 문서가 아닌 주민센터에서 팩스민원신청으로 송부받은 사립대학교 졸업증명서의 팩스 출력본이 주민센터의 직인 날인 등으로 비로소 원본 문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원본 문서로 만든 것은 사립대학교가 아니라 주민센터라 할 것이어서 공문서로 취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협회 카페 (698) 게시 내용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맺는 말

주민센터에서 팩스민원신청으로 팩스로

송부받은 사립대학교 졸업증명서에 대한 귀 법인의 의견도 실무상 필요성에 비추어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이나, 논리적으로 볼 때, 주민센터에서 팩스민원신청으로 송부받은 사립대학교 졸업증명서의 팩스 출력본은 당해 문서 자체에 실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원본 문서가 아닌데, 그 위에 주민센터의 직인 날인 등을 함으로써 비로소 원본 문서가 되는 것이고 이는 공문서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이 불가하고 선언서나 진술서로 사서증서의 인증이 가능함)는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공증업무 지침 · 지시 ·
유권해석 등 회원 안내**

**1 공정증서 작성 시 신형 여권 또는 공무원
증 등을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처리
방법 회원 안내(2022. 8. 1.자)**

-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받을 때 주민
등록번호의 뒷 번호가 나타나지 않는
신형 여권 또는 공무원증 등과 같은 신
분증을 제출받는 경우에는 증서에 주
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기 위하여
반드시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
여금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제출하게
하여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업무처리방법을 2022.
8. 1. 각 회원사무소에 안내함.

● 협회 공문 원문

〈공증협 제2022-47호(시행 2022. 8. 1.)〉

수 신 : 각 회원 사무소 대표 변호사
 제 목 : 공정증서 작성 시 신형 여권 또는 공무원증
 등을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처
 리방법 안내

1. 귀 회원 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공정증서 작성 시 제출받는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의 신분증이 신형 여권 또는
공무원증 등으로 주민등록번호의 뒷 번
호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이는 공증인법
제2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증명서로서
촉탁인 등의 신분확인에 사용할 수는
있으나, 촉탁인 등의 주민등록번호 뒷
자리(와 주소)를 제대로 확인한 후 증서
에 기재할 수가 없어 나중에 그 공정증
서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3. 따라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받음에
있어서 신형 여권 또는 공무원증 등 주
민등록번호의 뒷 번호가 나타나지 않는
신분증을 제출받는 경우에는 증서에 주
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기 위하여
반드시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
금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제출하게 하여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공정증서를 작성
하시어 촉탁인 등의 특정과 관련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촉탁인인 채무자의 경우에
특히 유의). ☑

**2 신형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
처리방법 추가 회원 안내(2022. 9. 2.자)**

- 상기 1의 업무처리방법과 관련되어,
신형 여권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

본 대신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출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추가 업무처리방법을 2022. 9. 2. 각 회원사무소에 안내함.

● **협회 공문 원문**

<공증협 제2022-58호(시행 2022. 9. 2.)>

수 신 : 각 회원 사무소 대표 변호사

제 목 : 신형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처리방법 추가 안내

1. 협회 문서번호 공증협 제2022-47호(시행 2022. 8. 1.)와 관련됩니다.
2. 협회가 상기 문서로 안내해 드린 “공정증서 작성 시 신형 여권 또는 공무원증 등을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처리방법 안내”와 관련하여, 한 회원으로부터 신형 여권의 경우 주민등록등(초) 본 대신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를 받았습
니다.
3. 검토 결과, 신형 여권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대신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출받는 것도 가능하며 이는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제도 취지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방법이라고 사료되어 붙임과 같

은 의견서를 회신하였는바, 각 회원사무소에도 동 의견서 원문을 회람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질의[신형 여권과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시 신분증의 효력 여부] 회신 1부(총 2매). <끝>

※ 붙임

신형 여권과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시 신분증의 효력 여부) 회신

1. 질의 요지

귀 인가공증인의 2022. 8. 3.자 질의 취지의 요지는, “2020년 12월 21일부터 발급되는 신형 여권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고, 이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여권정보증명서를 여권과 함께 제시해야 신분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외교부 민원여권과의 보도자료가 확인되는데, 대한공증인협회의 2022. 8. 1.자 공문 ‘공정증서 작성 시 신형 여권 또는 공무원증 등을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처리방법 안내’에 제시된 주민등록(등)초본만 받아 업무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외교부에서 발급하는 여권정보증명서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공정증서 작성 시 신형 여권 또는 공무원증 등을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처리방법 안내의 취지

본 협회에서 2022. 8. 1.자로 시행한 ‘공정증서 작성 시 신형 여권 또는 공무원증 등을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처리방법 안내’의 취지는 공정증서 작성 시 제출받는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의 신분증이 신형 여권 또는 공무원증 등으로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공증인법 제2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증명서로서 촉탁인 등의 신분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그렇게 되면 촉탁인 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주소)를 제대로 확인한 후 증서에 기재할 수가 없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는 나중에 그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우려를 고려하여,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 받음에 있어서 신형 여권 또는 공무원증 등 주민등록번호의 뒷 번호가 나타나지 않는 신분증을 제출받는 경우에는 증서에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기 위하여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제출하게 하여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촉탁인 등의 특정과 관련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3. 신형 여권과 여권정보증명서로 신분 확인

외교부는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가 나타나지 않는 신형여권을 발급하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 여권을 신분증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조치하였고, 이 여권정보증명서와 신형 여권을 함께 제시하여 신분증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질의 사안의 해결

결론적으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 받음에 있어서 신형 여권 또는 공무원증 등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가 나타나지 않는 신분증을 제출받는 경우에는 증서에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기 위하여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함께 제출하게 하여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촉탁인 등의 특정과 관련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뿐만 아니라 주소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임), 특히 신형 여권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대신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출받는 것도 가능하며 이는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제도 취지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

3 인터넷 우체국 e-그린우편을 활용한 통지 방법 회원 안내(2022. 9. 2.자)

□ 공증인이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한 경우, 증서를 작성한 날부터 3일 내에 본인에게 통지하기 위한 등기우편을 직접 우체국에 방문하지 않고서도 인터넷 우체국에서 운영 중인 전자우편 ‘e-그린우편’ 서비스를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는 업무처리방법을 2022. 9. 2. 각 회원사무소에 안내함.

◎ 협회 공문 원문

〈공증협 제2022-57호(시행 2022. 9. 2.)〉

수 신 : 각 회원 사무소 대표 변호사
제 목 : 인터넷 우체국 e-그린우편을 활용한 통지 방법 안내

1. 귀 회원 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들 아시다시피 공증인이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증서를 작성한 날부터 3일내에 본인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공증인법 시행령 제13조). 이와 같은 대부분의 공증사무소에서는 공증사무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근처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게 하여 통지서를 우편발송하고 있을 것입니다.

3. 이런 경우 인터넷 우체국에서 운영 중인 전자우편 ‘e-그린우편’ 서비스를 통해 직접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통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회원사무소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또한 인터넷 우체국에서 운영 중인 전자우편 ‘e-그린우편’ 서비스 중 ‘예약발송’ 기능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57조 및 제35조 등에 따라 집행문 재도부여 또는 수통부여 시 채무자에게 1개월 후쯤 통지하려고 할 때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4. ‘e-그린우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우체국(www.epost.go.kr) 콘텐츠 중 우편 메뉴의 전자우편 중 e-그린우편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4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의 촉탁인 신원 확인 가능 여부 관련 법무부 유권해석 회원 안내 (2022. 11. 4.자)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발급·사용되기 시작한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관련하여, 협회가 공증실무상 공증인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의해서도 촉탁인

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지, 있다면 캡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사본을 어떻게 확보해서 보존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무부에 요청(2022. 8. 2., 공증협 제2022-49호)한 데 대하여, 법무부가 “촉탁인 신원 확인 절차에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모바일 신분증 어플리케이션의 화면을 전자복사·스캔하였다고 해서 이를 신분증의 사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증 서식규칙 제10조에 따른 촉탁인 증명사본 보존을 위해 실물 신분증을 제출 받고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고 협회에 시달해 온 유권해석을 2022. 11. 4. 각 회원사무소에 안내함.

● 협회 공문 원문

<공증협 제2022-85호(시행 2022. 11. 4.)>

수신 : 각 회원 사무소 대표 변호사
 제목 :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의 촉탁인 신원 확인 가능 여부 관련 법무부 유권해석 안내

1. 귀 회원 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가 2022. 8. 2. 법무부에 요청한 “모바

일 운전면허증으로의 촉탁인 신원 확인 가능 여부 등에 관한 업무지침”에 대하여, 법무부는 붙임과 같이 ‘질의 회신’ 형식으로 협회에 유권해석 공문(법무과-8081, 2022. 10. 27. 시행, 2022. 10. 31. 협회 접수)을 시달해 왔는바, 이를 각 회원사무소에 전달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무부 문서번호 법무과-8082(시행 2022. 10. 27.) 공문 사본 1부(총 2매).

※ 붙임 : 법무부 문서번호 법무과-8082(2022. 10. 27. 시행) 공문 내용

제목 : 질의 회신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의 촉탁인 신원 확인 가능 여부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붙임 : 질의 답변 1부.

모바일신분증을 활용한 공증업무
처리방안 등

[질 의]

- 모바일신분증을 활용한 촉탁인 확인, 신분증 사본 보관 등 업무 처리 방법

[답 변]

- 공증인은 증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활용하여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하고(공증인법 제27조), 그 사본을 부속서류로 보존하여야 합니다 (공증서식규칙 제10조).
- 모바일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하 ‘모바일 신분증’)의 확인은 주민등록법 제25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실물 신분증의 확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공증인법 제27조에 따른 촉탁인 신원 확인 절차에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그러나, 위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신분의 경우 ‘신분증 원본’이 신원정보 파일에 해당하여 모바일 신분증 어플리케이션의 화면을 전자복사·스캔하였다고 해서 이를 신분증의 사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본 보관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별도 검증시스템을 구축, 이용자의 신원정보 파일의

사본을 직접 넘겨받아 보존하여야 합니다.

- 이처럼 이용자의 신원정보 파일을 직접 넘겨받을 수 없는 이상 공증인은 모바일 신분증을 촉탁인 확인 수단으로 제출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증서식규칙 제10조에 따른 촉탁인증명 사본 보존을 위해 실물 신분증을 제출받고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합니다.
- 귀 기관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법무부 법무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주요 활동

1 임원 변동 현황

- 임원 사임 : 박형연 부협회장(공증인가 법무법인 코러스, 일신상 사유로 2022. 2. 16. 사임)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 임명

-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조(구성)에

따라 2022. 10. 12. 온라인(ZOOM) 화상 회의로 개최된 제3차 이사회에서 출석 구성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6명의 선임을 승인한 데 이어 2022. 10. 29. 서울 서초동 소재 서울 지방변호사회관 5층 인권실에서 개최된 제1차 임시총회에서 출석 구성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김진환 변호사(1948. 8. 18. /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한양)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함.

- 다음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명단.

순번	구분	성명	사무소	생년월일	자격취득사유	비고
1	위원장	김진환	법무법인 새한양	1948. 8. 18.	제14회 사법시험	
2	부위원장	이선희	공증인가 평화합동	1949. 12. 23.	제20회 사법시험	
3	간사	박창수	임명공증인	1962. 1. 5.	제41회 사법시험	
4	위원	김종환	대전종합 법무법인	1949. 8. 5.	제2회 군법무관임용시험	
5		이남진	법무법인 대성	1957. 4. 20.	제26회 사법시험	
6		박형섭	서울동남 법무법인	1960. 7. 28.	제36회 사법시험	

3 공증인연수원장 및 연수위원 임명

- 「공증인연수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2022. 4. 25. 개최된 2022년도 제2차 이사회에서 협회장이 연수원장 임명 후보로 추천한 양동관 변호사(1948. 12. 24. /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한양)를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공증인연수원 연수원장으로 임명함.

- 이후 동 규칙 제2조 제5항에 따라 협회장은 2022. 4. 29. 사무국 회의실에서 신임 연수원장과 회동을 갖고 연수위원 임명을 위한 협의를 거쳐 5명의 회원을 연수위원으로 임명함.

□ 다음은 공증인연수원 구성원 명단.

순번	구분	성명	사무소	생년월일	자격취득사유	비고
1	위원장	양동관	법무법인 새한양	1948. 12. 24.	제14회 사법시험	
2	연수위원	박종욱	임명공증인	1961. 10. 29.	제44회 사법시험	당연직
3		김재수	임명공증인	1972. 10. 27.	제42회 사법시험	
4		박상진	법무법인 신안산제일	1959. 4. 20.	제25회 사법시험	
5		양승원	임명공증인	1966. 12. 24.	제45회 사법시험	
6		한정화	임명공증인	1963. 12. 24.	제31회 사법시험	

4 법무부 공증제도개선위원회 제22차 회의 개최

□ 법무부가 2022. 7. 26. 서초동 소재 우진빌딩에서 개최한 제22차 공증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① 법무과에서 선정한 검사결과서 작성 의무 신설 등을 통한 참석인증 제도 관련 공증인법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개정안, ② 협회에서 건의한 선서인증 제도의 활용을 통한 공법인·비영리법인에 대한 의사록인증 면제 제도 관련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개정안, ③ 사서증서 보존기간 확대 방안, ④ 수수료 계산서 편철방식 및 서식 변경 등의 논의를 진행함.

□ 이후 협회에서는 참석인증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따라 검토되고 있는 공증인법 제66조의2의 개정 추진을 계기로, 동조

에 관하여 개정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일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상기 ②의 경우도 법률체계에 맞게끔 시행령이 아닌 법률 개정으로 포함하며, 추가로 현행 등기실무상 인증 받은 의사록 대신 인증받지 아니한 ‘서면결의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고 있는 것도 대법원의 상업등기선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차제에 ‘서면결의서’도 인증받도록 하는 규정을 공증인법에 명문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음을 건의하는 공문을 법무부에 2022. 9. 20.자로 제출함.

5 법령개정추진위원회(TF) 설치

□ 2022. 10. 29. 개최된 2022년도 제1차 임시총회에서 출석 회원이 제안한 인도집행증서 범위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2년도 제13차 상임

이사회 의결로 TF 형태의 ‘법령개정추진 위원회’를 2022. 12. 7. 설치함.

- 이와 관련하여, 협회는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2(특정동산의 범위) 각 호 동산 중에서 제2호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제3호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제6호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등기되거나 등록된 동산 규정을 각각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인도집행증서 작성 대상 동산의 범위 확대를 위한 「공증인법 시행령」 개정 건의” 공문을 법무부에 2022. 11. 30.자로 발송하고, 위원회에서는 별도로 법무부 법무과장과 접촉하여 시행령 개정 건의 취지를 설명한 바 있음.

6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와의 업무협약 체결

- 협회와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는 임의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2. 2. 18. 오후, 법무사회관 강당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함. 이번 협약으로 두 단체는 △ 임의후견계약과 공증분야에 관한 학술적·실무적 정보 교환 △ 성년후견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협력 △ 양 단체 소속 회원 등을 대상으로 한 후견제도 안내 및 홍보 등의 교류를 진행해 나가고 있음.

7 공증인연수원 네이버 카페 개설

- 2022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현재 네이버 밴드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공 중인 공증실무Q&A 연수교육 자료를 공증인 사무직원에게도 제공하면서 온라인 상시 연수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네이버 카페 ‘대한공증인협회’를 2022. 6. 20. 개설하고 공식 운영에 들어감.

- 네이버 카페 멤버는 2022. 12. 31. 기준 총 344명(사무소 기준 232개소)으로, 카페에는 연수교육자료 이외 전체 회원 대상 협회 공문을 비롯하여 법무부 공증지침, 협회의 연구용역결과보고서, 공증 논문 등 다양한 자료도 함께 게재하고 있음.

8 2022년도 공증사무직원 연수교육 2차례 시행

- 협회는 2022. 9. 17.과 11. 24. 2차례에 걸쳐 온라인(ZOOM)을 이용한 웨비나(Webinar) 방식으로 2022년도 공증사무직원 연수교육을 개최하여, 협회가 무상 보급중인 공증문서관리프로그램 사용 방법에 대하여 개발자인 공증인 한정화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교육을 시행함.

9 공증장부 사용상 주의사항 회원 안내

- 일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장부를 분실

하거나 심지어 공증장부에 기재된 인증연도를 임의로 변경해서 사용한 경우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협회는 회원 사무소가 협회장의 인증을 받은 공증장부를 비치·사용함에 있어서 절대로 임의로 수정 사용하거나 훼손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만일 과실로 공증장부가 분실되거나 혹은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협회로 연락하여 협회의 조치에 따라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주의사항을 2022. 10. 19. 각 회원사무소에 안내함.

◎ 협회 공문 원문

<공증협 제2022-76호(시행 2022. 10. 19.)>

수 신 : 각 회원 사무소 대표 변호사
제 목 : 공증장부 사용상 주의사항 안내

1. 귀 회원 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일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장부를 분실하거나 심지어 공증장부에 기재된 인증연도를 임의로 변경해서 사용한 경우가 발생하여, 위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전국의 공증사무소에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3.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사서증서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한 경우에는 협회장으로부터 인증받은 증서원부나 인증부의 해당 번호란에 각 기재하여야 함(공증인법 시행령 제20조 참조)은 공증사무소 관계자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공증장부에 관한 협회장의 인증업무는 원래 법무부장관의 업무이나(공증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협회장에게 위탁되어 처리되고 있는 공무(공증인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로서 협회장에 의해서 인증받은 공증장부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받을 엄중한 사항입니다.

또한 일단 인증·제공된 해당 번호에 관한 장부는 정당한 사유가 증명되지 않는 한 다시 재인증받을 수 없으므로 관리소홀로 분실되면 안 됩니다. 공증장부를 분실하게 되면 그에 기재된 공증의 효력에 관하여 의심을 받을 수도 있음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공증장부의 관리소홀을 이유로 공증인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확정일자부도 마찬가지로입니다(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및 제6조).

4. 따라서 각 회원 사무소에서는 협회장의 인증을 받은 공증장부를 비치·사용함에

있어서 절대로 임의로 수정해서 사용하
거나 훼손하지 마시기 바라며, 만일
과실로 공증장부가 분실되거나 혹은 훼손
된 경우에는 임의로 처리하지 마시고
즉시 협회 사무국으로 연락하여 협회의
조치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 공증제도 개선 연구용역 사업 시행 및 온
라인 학술보고회 개최**

□ 공증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로 협회 차
원의 연구용역사업을 시행하고, 각 연
구결과에 대하는 회원 대상 온라인
(ZOOM) 학술보고회를 개최함. 최종 연
구용역결과보고서는 협회 홈페이지와
네이버 카페에 게재되어 있음.

- ① 주주총회의 서면결의와 그 의사록의
작성 및 공증 - 연구책임자 이형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제2차
학술보고회 개최 2022. 2. 9.)
- ② 건물·토지·특정동산의 인도·반환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의 활성화 방안
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전병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집행중
서 대상범위 관련 한국민사집행법
학회 학술대회 개최 2022. 3. 19.)
- ③ 자기신탁공증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 변호사, 공동연구 오
영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3차 학술보고회 개최 2022. 11. 21.)

11 한국상속법학회와 공동 학술대회 개최

□ 협회는 한국상속법학회와 공동으로 “상속
법의 쟁점”을 주제로 한 “2022년도 제4회
한국상속법학회 정기 학술대회”를 2022.
12. 9.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
서 학술대회(온라인 화상회의 병행)를
주최함.

□ 이번 학술대회 주제 중 ‘포괄유증의 법리
(주제발표 남상우 변호사·협회장)’는 공증
실무상 종종 다루는 포괄유증에 관하여
공증인들이 공부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
다는 회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협회가
한국상속법학회에 직접 요청하면서 학술
주제로 채택되었음.

**12 2019년도~2021년도 통권 제12호~제14호
『공증과신탁』 PDF 발간**

□ 2018년부터 2020년도 협회 주요 회무
등을 중심으로 게재한 2019년도부터
2021년도 통권 제12호, 제13호, 제14호
『공증과신탁』를 PDF 전자파일 형태로
각각 2022. 8. 31., 10. 31., 12. 31.자로
발간함.

□ 협회지 분량은 표지 포함 제12호는 70면,

제13호는 235면, 제14호는 288면이며, 협회 홈페이지 내 ‘공증과신뢰’ 자료실에서 PDF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음.

13 태국 외교부 공무원단 협회 내방

□ 태국 외교부 분사폐안원(Mr. Narong Boonsatheanwong) 심의관(영사부국장) 등 공무원단 10명이 2022. 9. 27. 협회를 내방하여, 한국에서의 아포스티유와 공증인의 역할, 사서증서와 번역문 인증 절차 등 한국 공증제도에 관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짐.

14 2022년도 CAAs 정기회의 주제발표

□ 2022년도 CAAs 위원장(일본공증인연합회)이 2022. 9. 16. 화상회의로 개최한 2022년도 CAAs 정기회의에서의 주제발표(코로나19 팬데믹 현재와 이후 공증의 기능 행사 / The exercise of the notarial function under and after the pandemic of Covid-19) 중 우리 협회에 요청해 온 C분과의 “원격 고객과의 공증활동 소개(Introduction of Notarial Activity with remote clients)”에 대하여, 협회는 아래와 같은 발표문(국문/영문)을 2022년도 CAAs 위원장에게 2022. 9. 8. 전자우편 발송함.

◎ 대한공증인협회 주제발표문

〈국문〉

원격 고객과의 공증활동 소개 -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고객이 공증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공증인에게 공증을 촉탁하는 것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은 공증인의 모든 직무에 관하여 가능한 것이 아니고,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을 부여할 때만 가능하였습니다.

원래 대한민국에서 2009. 2.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을 처음 도입할 때(2010. 8.부터 시행)는 고객이 반드시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야 촉탁할 수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말하자면 인증 대상이 종이문서가 아니라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인 점을 제외하고는 종이문서에 대한 인증과 큰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의 이용이 저조하자 2017. 12.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화상장치 앞에서 공증인에게 촉탁을 하고,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촉탁인 본인을 확인하여 촉탁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증인법을 개정하였고, 2018. 6.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이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촉탁인을 확인하고 전자문서등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전자공증을 ‘화상공증’이라고 칭합니다. 화상공증의 용어를 이해함에 있어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 화상공증이 시행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있기 1년 반 전입니다. 화상공증이 처음 시행될 당시 촉탁인 확인은 진위확인인 가능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으로만 가능했습니다. 한국의 외국인인 신분증 진위확인을 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화상공증을 이용할 수는 없는 시스템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외에 나가 있는 국민들이 입국을 할 수 없어 각종 사적 거래나 은행거래 등에서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없게 되면서 화상공증이 그 대안으로 부각되면서 화상공증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화상공증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증 대상 문서는 은행 위임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1. 11.부터는 여권에 의해서도 촉탁인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화상공증이 널리 알려지고 해외에 나가 있는 국민들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이용이 제고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화

상공증이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공증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화상공증을 받으려는 사람이 공증인과 화상으로 대화를 나누기 전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미리 처리하여야 하는 절차를 밟는 데 익숙하지 않아 공증인들이 이를 일일이 지도하여야 하는 등 업무가 일반 공증업무를 처리할 때보다도 오히려 업무강도가 훨씬 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위임장의 인증수수료는 규정상 턱 없이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어(한화 3,000원 또는 25,750원), 공증인들의 관심도 적어 화상공증의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공정증서까지도 작성할 수 있게 되는 등 화상공증이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바뀌게 될 경우에는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한 지금까지의 공증제도나 공증인 제도도 변경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은 직무집행관할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 심지어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접속할 수 있으므로 접속자의 IP 주소를 기준으로 직무집행관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으면 특정 공증사무소로 공증일이 쏠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공증제도 감독기관인 법무부는 촉탁인이나 촉탁의사를 화상으로

확인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부 공증인들은 촉탁인이나 촉탁의사의 확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화상공증의 이용이 비록 많이 증가하였다고는 하나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미미한 편입니다. 공증에 관한 한, 아직은 종이문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증을 포함하여 화상공증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종이서류로 공증 받은 것을 전자문서로 증명해 주는 것과 전자문서로 공증받은 것을 종이문서로 증명해 주는 것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대한공증인협회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공증인법을 개정하여 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끝>

〈영문〉

Introduction of Notarial Activity with remote clients – Republic of Korea

In Korea, it has been allowed to a limited extent since before the COVID-19 Pandemic for clients to use a webcam or similar audio-visual conference equipment when commissioning

notarization without visiting notary offices in person. However, It was not possible for all duties of a notary, but only authentication of electronic documents or computerized documents was possible.

Originally, in Korea, when authentication on electronic documents or computerized documents was first introduced in February 2009 (enforced since August 2010), clients had to visit a notary office to make a commission. In other words, there was little difference from the authentication of paper documents, except that the subject of authentication was electronic or computerized documents, not paper documents.

However, due to the poor use of authentication on electronic or computerized documents, the Notary Public Act was revised on December 2017, enabling clients to commission a notary in front of a webcam or similar audio-visual conference equipment without visiting a notary office and notaries to confirm the identity of the client and their intent in real-time using a webcam or similar audio-visual conference equipment and was enforced since June 2018 (electronic notarization confirming clients using a webcam or similar audio-visual conference equipment and authenticating electronic documents, etc. will hereinafter be referred to as ‘video notarization.’

In understanding the term video notarization, please note that preparation of notarial deeds by a notary is not included.). As such, it was a year and a half before the COVID-19 pandemic when video notarization was implemented in Korea. At the time when video notarization was first implemented, the identification of the client was only possible with a resident registration card and a driver's license that could confirm the authenticity. It was a system that foreigners in Korea whose ID cards are unverifiable cannot use video notarization.

After the COVID-19 Pandemic, citizens abroad were unable to enter Korea, so confirming their intent in various private transactions or bank transactions; therefore, video notarization became widely known as an alternative. Most of the documents subject to authentication are power of attorney for banks. Meanwhile, from November 2021, the client can also be identified by passports.

As such, it is true that video notarization has become widely known and its use has been improved to some extent for citizens abroad, but video notarization is not yet widely used in Korea. In addition, clients who wish to commission a video notarization are not accustomed to handling procedures by computers

or smartphones prior to conversing with notaries on video, so notaries have to guide them one by one and this makes the task much more intense than general notarization processes; nonetheless, the fee, especially for power of attorney, is set at a low price (KRW 3,000 or KRW 25,750) by regulation and due to the lack of interest from notaries, this has been an obstacle to the establishment of video notarization.

Furthermore, there is an opinion that the notarial system or notary system based on paper documents should be modified if video notarization becomes to be widely used in processes such as the preparation of notarial deeds by a webcam or similar audio-visual conference equipment. Some argue that the internet can be accessed by anyone within, outside the jurisdiction, or even overseas: therefore, the jurisdiction of duties should be applied based on the accessor's IP address. This is because if such regulations are not established, notarial affairs may be concentrated on specific notary offices.

Meanwhile, the Ministry of Justice, the supervisory agency of the notarial system in Korea, is reportedly preparing legislation to confirm clients and their intent for the

preparation of notarial deeds by video. Some notaries are opposed to this idea, citing that there may be issues with the confirmation of clients and their intent.

Although the use of video notarization has increased a lot since the COVID-19 pandemic, overall, it is still insignificant. When it comes to notarization, you can say that it is still focused on paper documents.

In order to further activate the video notarization, including electronic notarization, it must be possible to certify notarized paper documents as electronic documents and to certify notarized electronic documents as paper documents. The Korean Notaries Association has proposed to the Ministry of Justice to revise the Notary Public Act to make this possible and it is currently under consideration. <END>

15 2023년도 달력 제작 및 배포

□ 2022년도 달력과 동일한 형태의 2023년도 달력(3단 형태, 기성품)을 구매한 후, 달력 하단 여백에 협회 로고 및 “분쟁예방은 공증으로” 문구를 청색으로 인쇄(제작)한 후, 2022년 12월 중 각 회원사무소에 4부씩 배포 완료함.

2022년도 협회 주요 회무 일지

- 2022. 1. 12. : 공증실무 콜백상담신청 휴대전화번호 변경 안내 / 회원
- 2022. 1. 12. : 2022년도 제1차 (임시)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공증제도개선위원회 상정 예정 안건에 대한 논의 ② 성년후견지원본부의 공증제도 교육 MOU 체결 제안 논의 ③ 공증인 사무직원 채용희망자 등록 및 정보제공 도입 논의 ④ 인도집행증서 연구용역 관련 회원 설문조사 내용 검토 ⑤ 기타 논의
- 2022. 1. 18. : 공증제도 개선 연구용역(주주총회의 서면결의와 그 의사록의 작성 및 공증) 제2차 학술보고회 개최 안내 / 회원
- 2022. 1. 18. : 인도집행증서 작성 현황 설문조사 / 회원
- 2022. 1. 18. : 네이버 밴드(SNS) 가입 독려(재)안내 / 회원
- 2022. 1. 24. : 2022년도 제2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2022년도 사업계획(안) 논의 ② 2021년도 일반회계

- 및 기금특별회계 결산서(안) 검토
 ③ 공증 장부 관리 방안 논의 ④ 보존
 기간 만료된 공증서류 일괄폐기 방안
 추진 논의 ⑤ 기타 논의
- 2022. 1. 27. : 2021년도 연수교육 상황 및
 실적 보고 / 법무부
 - 2022. 1. 28. : CAAs에서 요청한 2021. 9.
 25. 이후 활동 및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서
 발송 / 2022년도 CAAs 위원장(일본공증인
 연합회)
 - 2022. 2. 8. : 국무총리실 주최 비영리법인
 온라인총회 관련 법령 개정 간담회 참석
 - 2022. 2. 9. : 공증제도 개선 연구용역
 (주주총회의 서면결의와 그 의사록의 작성
 및 공증) 제2차 학술보고회 온라인(ZOOM)
 개최
 - 2022. 2. 11. : 2022년도 제1차 선거관리
 위원회 개최 통지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2022. 2. 16. : 임원(박형연 부협회장)
 사임(일신상의 사유)
 - 2022. 2. 18. :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와의 MOU 체결
 - 2022. 2. 21. : 2022년도 제3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2022년도 일
 반회계 및 기금특별회계 예산서(안)
 검토 ② 대한공증인협회 회칙 일부
 개정회칙안 논의 ③ 임원선거규칙
 제정안 논의 ④ 재정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논의 ⑤ 위원회운영규칙 일
 부개정규칙안 논의 ⑥ 조사위원회규
 칙 일부개정규칙안 논의 ⑦ 공증인
 연수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논의 ⑧ 장부 조제
 및 인증 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안 논의 ⑨ 공증사무직원 채용희망
 자 등록 및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제정안 논의 ⑩ 제1차 이사회 겸 제
 4차 상임이사회 연석회의 개최 논의
 ⑪ 2022년도 정기총회 개최안 논의
 ⑫ 기타 논의
 - 2022. 2. 23. : 2022년도 제1차 선거관리
 위원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협회장 및 감사
 선거규칙 제정안 논의 ② 기타 논의
 - 2022. 2. 23. : 대한공증인협회 연구용역보
 고서 납본(기증) /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회
 도서관, 법원도서관
 - 2022. 2. 25. : 2022년도 제1차 이사회 겸
 제4차 상임이사회 연석회의 개최 통지 /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구성원

□ 2022. 3. 3. : 2022년도 제1차 이사회 겸 제4차 상임이사회 연석회의 의안 자료 추가 송부 /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구성원

□ 2022. 3. 7. : 2022년도 제1차 이사회 겸 제4차 상임이사회 연석회의 개최

- ▶ 제1차 이사회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2022년도 사업계획 승인 (수정 가결) ②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특별회계 결산서(안) 승인 (원안 가결) ③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특별회계 예산서(안) 승인 (원안 가결) ④ 대한공증인협회 회칙 일부개정회칙안 승인 (원안 가결) ⑤ 재정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승인 (원안 가결) ⑥ 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승인 (원안 가결) ⑦ 조사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승인 (원안 의결) ⑧ 공증인연수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승인 (원안 가결) ⑨ 장부 조제 및 인증 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원안 가결) ⑩ 협회장 및 감사 선거규칙안 (원안 가결) ⑪ 공증사무직원 채용 희망자 등록 및 정보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원안 가결) ⑫ 2022년도 정기총회 개최 승인 (원안 가결)

- ▶ 제4차 상임이사회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 제도

관련 논의(차기 회의 재논의 의결)
② 무연고자 장례 관련 공증을 위한 보건복지부 등과의 MOU 체결 논의 (미상정) ③ 기타 논의

□ 2022. 3. 11. : 「공증사무직원 채용희망자 등록 및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시행 안내 / 회원

□ 2022. 3. 12. : 2022년도 정기총회 개최 통지 / 회원

□ 2022. 3. 12. : 대한공증인협회 2022년도 정기총회 개최 보고 / 법무부

□ 2022. 3. 16. : 집행증서 대상범위 관련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학술대회 개최 안내 / 회원

□ 2022. 3. 18. : 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 제도에 대한 의견 조회 회신 / 법무부

□ 2022. 3. 23. : 후견계약공정증서 작성 현황 설문조사 / 회원

□ 2022. 3. 26. : 2022년도 정기총회 개최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특별회계 결산서 승인 (원안 가결) ②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특별회계 예산서 승인 (원안 가결) ③ 대한공증인협회 회칙 일부개정회칙 승인 (원안 가결)

- ④ 재정규칙 일부개정규칙 승인 (원안 가결) ⑤ 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승인 (원안 가결) ⑥ 조사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 승인 (원안 의결) ⑦ 공증인연수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승인 (원안 가결) ⑧ 협회장 및 감사 선거 규칙 제정 (원안 가결) ⑨ 기타

- 2022. 3. 31. : 대한공증인협회 2022년도 정기총회 결과 안내 / 회원

- 2022. 4. 4. : 대한공증인협회 2022년도 정기총회 결과 보고 / 법무부

- 2022. 4. 6. : 대한공증인협회 회칙 변경 인가 신청 / 법무부

- 2022. 4. 6. : 공증사무직원 채용 희망자 등록 제도 시행 안내 / 회원

- 2022. 4. 11. : 2022년도 제5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공증인연수원장 선임 후보 내정안 논의 ② 공증인연수원 네이버 카페 개설 논의 ③ 회무수행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기준에 관한 지침 개정 논의 ④ 제2차 이사회 개최 논의 ⑤ 2022년도 정기총회 감사 권고사항 검토 ⑥ 기타 논의

- 2022. 4. 14. : 2022년도 제2차 이사회 개최 통지 / 이사회 구성원

- 2022. 4. 25. : 2022년도 제2차 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공증인연수원장 임명 승인 (원안 가결) ② 2022년도 정기총회 감사 권고사항 논의 (안건 철회) ③ 기타

- 2022. 4. 28. : 공증인연수원 연수원장 임명 통지 / 양동관 변호사(공증인가 법무법인 새한양, 임기 2023년도 정기총회일까지)

- 2022. 5. 2. : 2022년도 제6차 (임시)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임원의 직책 수당 지급에 관한 지침 제정 ② 회무수행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기준에 관한 지침 개정 ③ 사무국장 직무수당 지급 논의 ④ 공증업무 질의(추심채권자의 승계집행문 부여 가능 여부 질의 및 유언공정증서 작성 가능 여부 질의) 회신 논의 ⑤ 기타 논의

- 2022. 5. 6. : 질의(추심채권자의 승계집행문 부여 가능 여부) 회신 / 공증인가 법무법인 ○○○

- 2022. 5. 6. : 공증인연수원 연수위원 임명 통지 / 신임 연수위원

- ▶ 공증인연수원 연수위원 명단(가나다순 임기 2023년도 정기총회일까지)
 - 김재수[임명공증인]
 - 박상진[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안산제일]
 - 박중욱[임명공증인]
 - 양승원[임명공증인]
 - 한정화[임명공증인]
- 2022. 5. 16. : 2022년도 제7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공증업무 질의(서울중앙지방법원 사실조회 및 위임장 인증 수수료 관련 질의) 회신 논의 ② 공증사무직원 채용희망자 등록 및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논의 ③ 2022년도 사무국 직원 급여(연봉) 인상률 책정 ④ 기타 논의
- 2022. 5. 17. : 질의(유언공정증서 작성 가능 여부) 회신 / 임명공증인 ○○○
- 2022. 5. 27. : 인감증명 및 서명확인제도 발전 방안 마련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 안내 / 회원
- 2022. 5. 30. : 일본공증인연합회 신임 회장 취임 축하 인사 / 일본공증인연합회
- 2022. 6. 3. : 공증제도개선위원회 안건(선서 인증제도를 활용한 비영리법인 의사록인증 제도 개선) 건의 / 법무부
 - 2022. 6. 7. : CAAs가 요청한 원격공증 문서 설문지 답변 제출 / 2022년도 CAAs 위원장(일본공증인연합회)
 - 2022. 6. 10. : 자기신탁 공정증서 작성 현황 등 설문조사 / 회원
 - 2022. 6. 10. : 네이버 카페 “대한공증인협회” 개설 및 가입 안내 / 회원 및 공증사무직원
 - 2022. 6. 13. : 질의[사서증서(위임장) 관련 공증수수료 문의] 회신 / 공증인가 법무법인 ○○○
 - 2022. 6. 17. : 2022년도 제8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상임이사 업무 분장 ② 공증업무 질의(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전주지방법원 각 사실조회) 회신 논의 ③ 총회에서의 감사 권고사항 관련 회원 의견 요청 논의 ④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의 성년후견인 양성과정 강사 요청 논의 ⑤ 협회장에 대한 회무수당 또는 급여 지급액 검토 ⑥ 기타 논의
 - 2022. 6. 20. : 공증사무직원 대상 네이버 카페 “대한공증인협회” 개설 운영

- 2022. 6. 29. : 공증실무상담 신청 접수 휴대전화번호 변경 안내 / 회원
- 2022. 6. 29. : 2022년도 정기총회 감사 권고 사항 관련 회원 의견 요청 / 회원
- 2022. 6. 29. : 2022년도 제1차 법령정비특별위원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공증인법 시행령 협회 측 개정안 검토 ② 기타 논의
- 2022. 7. 6. : 2022년도 연회비 납부 안내 / 회원
- 2022. 7. 18. : 2022년도 제9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서울변호사 신용협동조합 만기 정기에금 재예치 금융기관 논의 ② 전주지방법원 사실조회 회신 (재)논의 ③ 법무부의 「공증업무 광고에 관한 규정(안)」 논의 ④ 서면결의서에 대한 의사록인증 「공증인법」 개정 건의 논의 ⑤ 집행증서 작성 시 여권 또는 공무원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경우 업무처리 논의 ⑥ 모바일신분증으로 촉탁인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 ⑦ 2022년도 제1차 임시총회 및 제3차 이사회 개최 논의 ⑧ 협회지 발간 논의 ⑨ 기타 논의
- 2022. 7. 20. :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2나○○○○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조회 회신 /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항소)
- 2022. 7. 22. : 공증제도개선위원회 안건 (공증인법 제66조의2 개정) 건의 / 법무부
- 2022. 8. 1. : 공정증서 작성 시 신형 여권 또는 공무원증 등을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처리방법 안내 / 회원
- 2022. 8. 1. : 네이버 카페 “대한공증인협회” 가입 독려 안내 / 회원 및 공증사무직원
- 2022. 8. 2. :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의 촉탁인 신원 확인 가능 여부 등에 관한 업무지침 요청 / 법무부
- 2022. 8. 11. : 공증인의 제척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회원 질의 유권해석 요청 / 법무부
- 2022. 8. 17. : 2022년도 제2차 법령정비특별위원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공증인법 제66조의2 개정 사항(선서인증제도를 활용한 비영리법인 의사록인증제도 신설 및 검사서를 활용한 의사록 참석인증 제도 개선, 서면결의의 인증 의무 명문화 등) 논의 ② 인터넷우체국 e-그린우편을 활용한 통지서 등 송달방법 회원 안내 논의 ③ 기타 논의

- 2022. 8. 19. : 2022년도 CAAs 정기회의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협회 의견 회신 / 2022년도 CAAs 위원장(일본공증인연합회)
- 2022. 8. 29. : 2022년도 제10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의사록 인증 관련 협회 차원의 공증인법 개정안 법무부 건의 논의 ② 총회 감사 권고사항 관련 회원 의견수렴에 따른 향후 업무처리방향 논의 ③ 공증업무 질의(서울중앙지방법원 사실조회 및 위임장 인증 수수료 관련 질의) 회신 (재)논의 ④ 신형 여권에 의한 촉탁인 신분 확인 요령 안내 관련 (재)논의 ⑤ 인터넷우체국 e-그린우편을 활용한 통지서 등 송달 방법 회원 안내 논의 ⑥ 법무부의 「공증업무 광고에 관한 규정안」 관련 (재)논의 ⑦ 제16회 공증주간 설정 및 행사 관련 논의 ⑧ 한정화 변호사 공증문서관리프로그램 기부 계약 변경 논의 ⑨ 일반인 진정서 처리 방향 논의 ⑩ 기타 논의
- 2022. 8. 31. : 2019년도 통권 제12호 『공증과신뢰』 PDF 발간
- 2022. 8. 31. : 질의(사서증서(위임장) 관련 공증수수료 문의) 회신 / 공증인가 법무법인 ○○○
- 2022. 9. 1. : 질의(신형 여권과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시 신분증의 효력 여부) 회신 / 공증인가 법무법인 ○○
- 2022. 9. 2.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 주주총회결의무효 부존재확인등외소” 사실조회 회신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합의)
- 2022. 9. 2. : 인터넷 우체국 e-그린우편을 활용한 통지 방법 안내 / 회원
- 2022. 9. 2. : 신형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처리방법 추가 안내 / 회원
- 2022. 9. 2. : 제16회 공증주간 기념 2022년도 공증사무직원 연수교육 시행 및 참가 안내 / 회원
- 2022. 9. 6. : 공증인법 개정안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설문조사 참여 요청 안내 / 회원
- 2022. 9. 8. : 진정서 환부 / 민원인
- 2022. 9. 8. : 2022년도 CAAs 정기회의 대한 공증인협회 주제발표문 송부 / 2022년도 CAAs 위원장(일본공증인연합회)
- 2022. 9. 13. : 공증문서관리프로그램 연수교육 관련 안내(변경) / 회원

- 2022. 9. 17. : 2022년도 제1차 공증사무직원 연수교육 개최 / 공증사무직원 101명 참석
- 2022. 9. 19. : 2022년도 제11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 논의 ② 공증인연수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논의 ③ 공증사무직원 채용희망자 등록 및 정보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논의 ④ 간인제도 개선방안 건의 논의 ⑤ 공증인 제척사유 규정 정비 법무부 건의 논의 ⑥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한 공증인의 확정일자 부여 제도 폐지 건의 검토 ⑦ 2022년도 제1차 임시총회 개최안 논의 ⑧ 2022년도 제3차 이사회 개최 논의 ⑨ 기타 논의
- 2022. 9. 20. : 공증인법 제66조의2 개정안 건의 / 법무부
- 2022. 9. 27. : 태국 외교부 분사폐안원(Mr. Narong Boonsatheanwong) 심의관(영사부국장) 등 공무원단 협회 내방
- 2022. 9. 28. : 2022년도 제3차 이사회 개최 통지 / 이사회 구성원
- 2022. 9. 30. : 장부(증서원부) 파기에 따른 제인증 교부 보고 / 법무부
- 2022. 10. 5. : 2022년도 제12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공증업무 질의(사서증서 관련 질의 및 주민센터 팩스민원에 의한 사립대 졸업증명서 등본인증 여부 질의) 회신 논의 ② 부동산등기선례 개정 건의 논의 ③ 공정증서 경정 제도 도입 건의 논의 ④ 통역인 참여에 의한 외국인 유언공정증서 작성 가능 유권해석 건의 논의 ⑤ 공증인 배상책임제도 도입 필요성 검토 ⑥ 제3차 이사회 안건 추가(총회 감사 권고사항) 논의 ⑦ 기타 논의
- 2022. 10. 6. : 2022년도 제3차 이사회 안건 추가 안내 / 이사회 구성원
- 2022. 10. 6. : 공증인 직무교육 강사(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병서 교수) 추천 / 법무부
- 2022. 10. 11. : 질의(주민센터 팩스민원으로 송부받은 사립대학교 졸업증명서 등본인증 여부) 회신 / 공증인가 법무법인 ○○○
- 2022. 10. 12. : 장부 인증 규정 준수 촉구 / 공증인가 법무법인 ○○
- 2022. 10. 12. : 2022년도 제3차 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원안 가결) ② 공증인연수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승인 (원안 가결) ③ 공증사무직원 채용희망자 등록 및 정보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원안 가결) ④ 2022년도 제1차 임시총회 개최 승인 (원안 가결) ⑤ 총회에서의 감사 권고사항에 대한 회원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협회의 향후 업무처리방향 논의 (대안 가결) ⑥ 기타
- 2022. 10. 12. : 장부(인증부) 연도의 임의 변경 사용에 따른 연도 정정 및 재발급 보고 / 법무부
- 2022. 10. 14. : 2022년도 제1차 임시총회 개최 통지 / 회원
- 2022. 10. 14. : 대한공증인협회 2022년도 제1차 임시총회 개최 보고 / 법무부
- 2022. 10. 14.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 양수금” 문서송부촉탁 회신 / 수원지방법원 민사15단독
- 2022. 10. 19. : 공증사무직원 구직 정보 등록 간소화 및 회원사무소 구인 정보 제공 안내 / 회원
- 2022. 10. 19. : 공증장부 사용상 주의사항 안내 / 회원
- 2022. 10. 25. : 2022년도 제3차 법령정비특별위원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논의 ② 집단촉탁사건 보고기준 건수 하향 등 관련 지침 개정 건의 논의 ③ 공증제도 개선 의결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 처리 방안 논의 ④ 기타 논의
- 2022. 10. 27. : 법인의사록 인증제도 개선 방안 논의차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실 과장 및 사무관 협회 내방
- 2022. 10. 29. : 2022년도 제1차 임시총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 (원안 가결) ② 공증인연수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승인 (원안 가결) ③ 기타
- 2022. 10. 31. : 2020년도 통권 제13호 『공증과신뢰』 PDF 발간
- 2022. 11. 2. : UINL에서 요청해 온 회원 공증인 단체의 통계 갱신(현행화) 자료 회신 / UINL

- 2022. 11. 2. : 대한공증인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위원 임명 통보 / 신임 위원장 및 위원
 -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임기 2022. 10. 12.~2025. 10. 11.까지)
 - 김진환[공증인가 법무법인 새한양]
 -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명단(가나다순. 임기 2022. 10. 12.~2025. 10. 11.까지)
 - 김종환[공증인가 대전종합 법무법인]
 - 박창수[임명공증인/서울대법공증인합동]
 - 박형섭[공증인가 동남합동법률사무소]
 - 이남진[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성]
 - 이선희[공증인가 평화합동법률사무소]

- 2022. 11. 4. : 대한공증인협회 2022년도 제1차 임시총회 결과 안내 / 회원

- 2022. 11. 4. : 2023년도 장부 조제·인증 신청 안내 / 회원

- 2022. 11. 4. : 공증제도 개선 연구용역(자기 신탁 공증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제3차 학술보고회 개최 안내 / 회원

- 2022. 11. 4. : 2022년도 제2차 공증사무직원 연수교육 시행 및 참가 안내 / 회원

- 2022. 11. 4. :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의 촉탁인 신원 확인 가능 여부 관련 법무부 유권해석 안내 / 회원

- 2022. 11. 4. : 공증 업무유공 표창 대상자 추천 / 법무부

- 2022. 11. 4. : 대한공증인협회 2022년도 제1차 임시총회 결과 보고 / 법무부

- 2022. 11. 10. : 2022년도 제4차 법령정비 특별위원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공증인법 시행령 협회 측 개정안 검토 ② 기타 논의

- 2022. 11. 16. : 2022년도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 개최 통지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2022. 11. 17. : 2022년도 제13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예치기간 만료된 정기에금의 재예치 금융기관 선정 ② 회원의 총회 제안 사항에 관한 구체적 추진 방안 논의 ③ 협회에 등록된 회원사무소 구인정보 팩스 송부 안내 시행 논의 ④ 한국상속법학회와의 학술대회 공동 주최 논의 ⑤ 공증제도를 통한 등기사항의 간소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사업 추진 논의 ⑥ 감사의 총회 권고사항 관련 협회의 조치에 대한 (재)논의 ⑦ 기타 논의

- 2022. 11. 21. : 공증제도 개선 연구용역

- (자기신탁 공증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제3차 학술보고회 온라인(ZOOM) 개최
- 2022. 11. 24. : 2023년도 공증 장부 제공 / 공증업무대행청
 - 2022. 11. 24. : 2022년도 제2차 공증사무직원 연수교육 개최 / 공증사무직원 47명 및 공증인 2명 참석
 - 2022. 11. 30. : 인도집행증서 작성 대상 동산의 범위 확대를 위한 공증인법 시행령 개정건의 / 법무부
 - 2022. 12. 2. : 법인 의사록 인증제도 관련 법무부 연구용역 수행자(추신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협회 내방
 - 2022. 12. 5. : 한국상속법학회와의 학술대회 공동 주최 안내 / 회원
 - 2022. 12. 6. : 2023년도 협회 달력 배포 / 회원
 - 2022. 12. 7. : 법령개정추진위원회(TF)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통지
 - ▶ 위원장
 - 김주덕[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일]
 - ▶ 위원 명단
 - 김재수[임명공증인]
 - 김중선[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일]
 - 김진규[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일]
 - 박상진[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안산제일]
 - 박중욱[임명공증인/서울대법공증인합동]
 - 이종린[공증인가 법무법인 정동]
- 2022. 12. 7. : 2022년도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부위원장 및 감사 호선 ② 제22대 협회장 및 감사 선거 일정 검토 ③ 기타 논의
 - 2022. 12. 9. : 2022년도 제14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관련 협회 의견 검토 ② 회원의 공증업무 질의(제척사유 관련)에 대한 법무부 유권해석 검토 및 회신 논의 ③ 공증업무 질의(사서증서 공증 수수료 및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실조회) 논의 ④ 기타 논의
 - 2022. 12. 12.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대한공증인협회의 건의 / 법무부
 - 2022. 12. 21. : 제22대 협회장 및 감사 선거를 위한 선거인명부 사전 안내 / 회원
 - 2022. 12. 28. : 2022년도 미사용 장부 실적 회비 일부 반환 신청 안내 / 회원

- 2022. 12. 29. : 업무협조 의뢰(공증인 보조자 등록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 울산지방검찰청
- 2022. 12. 31. : 2021년도 통권제14호 『공증과신뢰』 PDF 발간

2022년도 회원 입회 및 탈회 현황

1. 회원 입회 (공증인 임명 및 인가)

- ❖ 공증인 오시열 - 소속 광주지검
 - 임명일 : 2022. 4. 20.
 - 임 기 : 2027. 4. 19.까지
 - 소재지 : 전남 순천시 왕지1길 3-4, 103호
(왕지동, 왕지빌딩) ☎ 57932
 - 전 화 : 061-725-9081
 - 팩 스 : 061-725-9082
 - 입회일 : 2022. 5. 4.
- ❖ 공증인가 법무법인 예일중앙 - 소속 서울중앙지검
 - 인가일 : 2022. 4. 20.
 - 인가유효기간 : 2027. 4. 19.까지
 - 대표 공증담당변호사 : 엄운용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8, 4층
(서초동, 일신빌딩) ☎ 06648
 - 전 화 : 02-598-4111
 - 팩 스 : 02-598-4112
 - 입회일 : 2022. 5. 10.
- ❖ 공증인가 법무법인 혜화 - 소속 서울중앙지검
 - 인가일 : 2022. 4. 20.
 - 인가유효기간 : 2027. 4. 19.까지

- 대표 공증담당변호사 : 최성수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삼성로 772, 602호
(청담동, 로데오프라자)
☎ 06070
- 전 화 : 02-512-9083~4
- 팩 스 : 02-6971-8084
- 입회일 : 2022. 5. 19.

❖ 공증인가 법무법인 도시 - 소속 서울중앙지검

- 인가일 : 2022. 4. 20.
- 인가유효기간 : 2027. 4. 19.까지
- 대표 공증담당변호사 : 이금규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5,
501호 (서초동, 승보빌딩)
☎ 06596
- 전 화 : 02-2183-0686
- 팩 스 : 02-2183-0690
- 입회일 : 2022. 5. 23.

❖ 공증인 심재훈 - 소속 수원지검

- 임명일 : 2022. 4. 20.
- 임 기 : 2027. 4. 19. 까지
- 소재지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101, 306호 (하동,
백현법조프라자) ☎ 16512
- 전 화 : 031-548-1233
- 팩 스 : 031-548-2353
- 입회일 : 2022. 5. 30.

❖ 공증인 정창섭 - 소속 수원지검

- 임명일 : 2022. 4. 20.

- 임 기 : 2027. 4. 19.까지
- 소재지 : 경기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298, 302호 (상현동, 드림타워
II) ☎ 16943
- 전 화 : 031-212-1002
- 팩 스 : 031-212-0922
- 입회일 : 2022. 5. 30.

2. 회원 탈회

(공증인 면직 및 인가취소)

❖ 공증인가 광화문 법무법인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대표 공증담당변호사 : 박윤숙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1, 613호
(신문로1가, 고려빌딩)
- 탈회일 : 2022. 2. 28.
- 사 유 : 공증인가 취소 신청

❖ 공증인 서보석

- 소 속 : 울산지검
- 소재지 : 울산 남구 두왕로 337, 3층
(신정동, 성곡빌딩)
- 탈회일 : 2022. 9. 3.
- 사 유 : 임기만료

❖ 공증인가 모란 법무법인

- 소 속 : 수원지검
- 대표 공증담당변호사 : 임상현 변호사
- 소재지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27, 3층 (성남동, 한성빌딩)

- 탈퇴일 : 2022. 10. 27.
- 사 유 : 공증인가 취소 신청

❖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에이팩스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대표 공증담당변호사 : 박기웅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10층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 탈퇴일 : 2022. 12. 9.
- 사 유 : 공증인가 재인가불허대법원판결확정

❖ 공증인가 법무법인 현대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대표 공증담당변호사 : 미신고
- 소재지 : 서울 중구 명동길 65, 8층
(명동1가, 보림빌딩)
- 탈퇴일 : 2022. 12. 19.
- 사 유 : 공증인가 취소(공증담당변호사 부재)

❖ 공증인 박동수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606,
601호 (논현동, 삼주빌딩)
- 탈퇴일 : 2022. 12. 31.
- 사 유 : 임명공증인 사임신청서 제출

❖ 공증인 최효진

- 소 속 : 대구지검
- 소재지 : 경북 김천시 삼락택지길 63, 2층
(삼락동)
- 탈퇴일 : 2022. 12. 31.

- 사 유 : 공증인 정년

3. 회원 명칭 변경 인가

❖ 공증인가 법무법인 화동

- 소 속 : 대전지검
- 구명칭 :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전합동
- 인가일 : 2022. 9. 6.

❖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

- 소 속 : 전주지검
- 구명칭 :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 인가일 : 2022. 11. 23.

❖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사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구명칭 :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송
- 인가일 : 2022. 12. 6.

4. 공증인 합동사무소 설치 인가

❖ 서울대법 공증인 합동사무소

- 소 속 : 서울남부지검
- 구성원 : 박중욱 공증인, 박창수 공증인
- 소재지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A동 316호 (가산동, 우림라이온스
밸리)

- 인가일 : 2022. 4. 11.

5. 공증사무소 이전 인가

❖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언

- 소 속 : 의정부지검
- 소재지 : (신 주소)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4층 (다산동, 법조빌딩 정행)
(구 주소) 경기 구리시 경춘로 239, 707호~708호 (인창동, 두진에코맥스빌딩)
- 인가일 : 2022. 1. 28.

❖ 공증인 류혜민 사무소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소재지 : (신 주소)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24, 201호 (양재동, 한신희플러스)
(구 주소)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4길 6, 2층 (양재동, 서우빌딩)
- 인가일 : 2022. 3. 21.

❖ 공증인가 법무법인 남부제일

- 소 속 : 서울남부지검
- 소재지 : (신 주소)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5, 403호 (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구 주소)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34길 30, 2층 (영등포동4가, 신
중앙빌딩)

- 인가일 : 2022. 3. 26.

❖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소재지 : (신 주소)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1층 (서초동, 대덕빌딩)
(구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7, 4층~5층 (서초동, 기영빌딩)
- 인가일 : 2022. 5. 9.

❖ 공증인가 광주제일합동법률사무소

- 소 속 : 광주지검
- 소재지 : (신 주소) 광주 동구 구성로204번길 2, 5층 (대인동)
(구 주소) 광주 동구 중앙로 209, 305호 (대인동, 하동정씨추신장학회관)
- 이전일 : 2022. 5. 27.

❖ 공증인 이상석 사무소

- 소 속 : 서울서부지검
- 소재지 : (신 주소)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93, 3층 서쪽 (창천동, 광신빌딩)
(구 주소)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93, 3층 동쪽 (창천동, 광신빌딩)
- 이전일 : 2022. 11. 9.

❖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

- 소 속 : 전주지검
- 소재지 : (신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29, 101호~102호
(만성동, 현대빌딩)

(구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32, 203호 (덕진동, 동승
빌딩)

- 이전일 : 2022. 11. 23.

❖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동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소재지 : (신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
로 115, 4층 및 6층 (서초동, 서릉
빌딩)

(구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
로 121, 3층~5층 (서초동, 옥재
빌딩)

- 이전일 : 2022. 11. 25.

❖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사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소재지 : (신 주소)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606, 601호 (논현동, 삼주빌딩)

(구 주소) 서울 서초구 법원로3
길 12, 1층 (서초동, 승소빌딩)

- 이전일 : 2023. 1. 1.